

의정활동보고서

제235회 임시회(2009. 8. 26 ~ 9. 8)



경상북도의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더위로 우리의 가슴을 우울하게 했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물러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제235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회기중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현지 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10일 정부로부터 우리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도민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의료복합단지가 세계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유치의 열정을 이어 나가고 의료단지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전산업으로 확산돼 대구·경북이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지방채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재원 배분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시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우리도가 녹색성장의 메카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7일 인도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체결을 기회로 삼아 전자, 철강 및 자동차 부품 등 우리도의 주력산업이 활성화되어 진정한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서 산업 인력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

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국비지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대비하여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해 주시고 특히, 급속히 확산되는 신종 플루 방역과 예방활동으로 도민들이 질병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정상화, 학습권 보장, 사교육 없는 교육실현으로 교육행정을 선진화 시키고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도민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챙겨보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I. 개	황		4
II. 의사일정		6	
III. 의안처리		13	
IV. 민원처리		14	
V. 본회의 보고사항		16	
VI. 5분 자유발언		23	
☐ 1차 본회의(한혜련 · 윤창욱 · 송필각 의원)		23	
☐ 2차 본회의(권인찬 · 박진현 · 이상용 의원)		31	

부 록

☐ 조례안		39
☐ 예산안		93
☐ 동의안		162
☐ 기타안		172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35회 임시회는 2009년 8월 26일 11:00 개최하여 9월 8일 까지 14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22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8월 26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한혜련 의원, 윤창욱 의원, 송필각 의원)을 청취한 후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회의록 서명의 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비롯,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추경예산안 및 결산심사, 2010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총 15명의 의원이 선임된 가운데 위원장에 황상조 의원, 부위원장에 윤창욱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09년 8월 26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이다.

휴회기간인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도청소년수련원 센터증축 3억 원,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3억 원 등 총 30건 16억 1996만 원을 감액하여 야사종합복지관부설 주민복지센터 신축 3억 원, 소방장비보강 3억 2천여만 원 등 14억 236만 4천 원을 증액(부기신설 포함)하고 나머지 2억 1759만 6천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는 영어체험교실 설치 7억 8천만 원 등 4건 19억 5901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권인찬 의원, 박진현 의원, 이상용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 등 동의안 2건,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제235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한편,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2009. 4. 7)에서 유보되었던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손진영 의원외 25인이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의결되었으며,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25명, 반대 7명, 기권 13명으로 나타났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9-10호(2009년 8월 17일)

라. 집회일시 : 2009년 8월 26일(수)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9년 8월 26일 ~ 9월 8일(14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누계 81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특 위	
									예결	기타
234회 까지	665	37	104	95	97	89	87	97	43	16
235회	22	2	2	4	2	1	2	5	4	
누 계	687	39	106	99	99	90	89	102	47	16

※ 제8대 의회 누계임

가. 본회의

- 7 -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8(화) 11:00 (제2차)	2.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2009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6.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7.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8.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보전을 위한 지방채발행안	원안가결
	9.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0.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1.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견	원안가결
	12.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3.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14.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15.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	수정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26(월) 10:30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27(화) 10:00 (제2차)	☐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회사무처 ☐ 제236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27(목) 11:00 (제1차)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공보관실, 새 경북기획단, 경제과학진흥국	
8. 28(금) 11:00 (제2차)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도청이전추진단, 공무원교육원, 기획조정실 ☐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27(목) 11:00 (제1차)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28(금) 11:00 (제2차)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경북도립대학, 행정지원국 ☐ 조례안 등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	
8. 31 ~9. 1 (2일)	☐ 현지확인 ○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영주시립양로원(만수촌) ○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 봉화군 노인복지센터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27(목) 11:00 (제1차)	☐ 조례안 ○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 보건환경연구원	
8. 28(금) 11:00 (제2차)	☐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교육청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27(목) 11:00 (제1차)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통상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27(목) 11:00 (제1차)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투자통상국 ☐ 조례안 ○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28(금) 11:00 (제2차)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26(수) 14:00 (제1차)	☐ 조례안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소방본부	
8. 27(목) 11:00 (제2차)	☐ 조례안 등 ○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 대구권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건설도시방재국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8. 28(금) 11:00 (제3차)	☐ 정책간담회 ○ 경상북도 및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8. 31 ~9. 1 (2일)	☐ 현지확인 ○ 군위 「동명~부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 봉화 물야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9. 2(수) 10:30 (제1차)	☐ 200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9. 3(목) 10:30 (제2차)	☐ 200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질의·답변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9. 4(금) 10:30 (제3차)	☐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질의·답변 ☐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 토론 및 의결 ※ 9. 7(월) 심사결과 및 보고서 정리	

Ⅲ. 의안처리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76 (344)	75 (339)	58 (273)	17 (61)	0 (4)	0 (1)	0 (1)	1 (4)	
조 례 안	소 계	50 (206)	49 (202)	35 (156)	14 (42)	0 (3)	0 (1)	0 (1)	1 (3)	
	의회 제안	12 (53)	12 (51)	9 (41)	3 (10)				(2)	
	도지사 제출	28 (114)	28 (113)	18 (85)	10 (25)	0 (2)	0 (1)	0 (1)		
	교육감 제출	10 (39)	9 (38)	8 (30)	1 (7)	0 (1)			1 (1)	
규 칙 안		0 (4)	0 (4)	0 (3)	0 (1)					
예산 · 결산		6 (30)	6 (30)	3 (13)	3 (17)					
동의 · 승인		5 (34)	5 (33)	5 (33)					0 (1)	
건의 의 안		1 (5)	1 (5)	1 (5)						
결 의 안		4 (19)	4 (19)	4 (17)	0 (1)	0 (1)				
기 타 안		10 (46)	10 (46)	10 (46)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4건)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07. 3.14상정유보)
- 경상북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 6.12심사유보)
- 경상북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 및 지원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11. 5상정유보)
- 경상북도난치병 학생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환경위원회-’09. 2.12심사유보)

Ⅳ.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10 (91)	(5)	1 (9)	1 (6)	6 (39)	(4)	(2)	1 (7)	(5)	1 (14)
의 회 운 영	(3)	(1)								(2)
기 획 경 제	2 (16)			1 (5)	(3)		(1)			1 (7)
행 정 보 건 복 지	(11)	(4)	(5)							(2)
교 육 환 경	1 (9)					(4)		1 (5)		
농수산	(7)							(1)	(5)	(1)
통 상 문 화	1 (7)		1 (4)	(1)			(1)	(1)		
건 설 소 방	6 (35)				6 (34)					(1)
특 별 위 원 회	(3)				(2)					(1)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0 (91)	10 (91)				
의회운영	(3)	(3)				
기획경제	2 (16)	2 (16)				
행 정 보건복지	(11)	(11)				
교육환경	1 (9)	1 (9)				
농 수 산	(7)	(7)				
통상문화	1 (7)	1 (7)				
건설소방	6 (35)	6 (35)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조례안 9, 예산안 2, 동의안 2, 기타안 1)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9. 8. 14)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상 임 위 (2009. 8. 17)
경상북도지사 (2009. 8. 1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 획 경 제 (2009. 8. 17)
경상북도지사 (2009. 8. 14)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09. 8. 17)
경상북도지사 (2009. 8. 14)	2009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행정보건복지 (2009. 8. 17)
경상북도지사 (2009. 8. 14)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 육 환 경 (2009. 8. 17)
경상북도지사 (2009. 8. 14)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 육 환 경 (2009. 8. 17)
경상북도교육감 (2009. 8. 14)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 육 환 경 (2009. 8. 17)
경상북도교육감 (2009. 8. 14)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보전을 위한 지방채발행안	교 육 환 경 (2009. 8. 17)
최윤희의원외 10인 (2009. 8. 17)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통 상 문 화 (2009. 8. 17)
경상북도지사 (2009. 8. 14)	202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건 설 소 방 (2009. 8. 17)
손진영의원외 21인 (2009. 8. 12)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설 소 방 (2009. 8. 17)
장병익의원외 19인 (2009. 8. 12)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설 소 방 (2009. 8. 17)
의회운영위원회 (2009. 8. 28)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회 운 영 (2009. 8. 28)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9. 3. 24)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	행정보건복지 (2009. 9. 8)

2. 조례공포 사항(6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9. 7. 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2009. 7. 16 (제3111호)
2009. 7. 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2009. 7. 23 (제3112호)
2009. 7. 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7. 23 (제3113호)
2009. 7. 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9. 7. 23 (제3114호)
2009. 7. 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2009. 7. 23 (제3115호)
2009. 7. 3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7. 23 (제3116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기획경제 위 원 회	2009. 7.31 (금)	경 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추진현장 확인 -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청취 및 개선요구 - 방사선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현황 청취 및 개선요구
교육환경 위 원 회	2009. 7.15 ~ 7.16	포 향 영 천 경 주 안 동	○위원회 소관 기관 현지확인 - 포항 영일만신항건설 현장, 보건환경 연구원, 도교육정보센터, 화랑교육원, 경북항공고등학교, 독립안동도서관 - 현황청취, 건의·애로사항 등 파악

위원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농 수 산 위 원 회	2009. 7.13 ~ 7.15	경 남 전 남	○ 경남 수산자원연구소 - 경남의 수산자원 연구분야에 대한 업무현황 파악 ○ 전남 우수 농수산물분야 비교시찰 및 자료 수집 - 전남 친환경농업단지, 전남 농협 친환경쌀작목반, 보성정농회의 친환경 교육관 등
	2009. 7.28 ~ 7.29	울 진	○ 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 - 행사장 점검, 애로사항 청취, 사후관리 대책 점검 ○ 민물고기연구센터 - 전반적인 업무현황 및 생태체험관 운영현황 파악
통상문화 위 원 회	2009. 7.22 ~ 7.23	청 송 영 양 영 덕	○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및 관광자원개발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 현지확인 - 청송 백자전승지, 숙박휴양거점사업 - 영양 석보 두들마을, 일월 주실마을 - 영덕 국민여가캠핑장, 고래불관광지
건설소방 위 원 회	2009. 8. 6 (목)	영덕황금 은어복원 사 업 장	○ 신활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확인 - 신활력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 제품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한 현안사항 토의 및 건의사항 수렴 등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 몽골지역 해외농업개발 현장방문

- 기 간 : 2009. 7. 3(금) ~ 7. 5(일), 3일간
- 장 소 : 몽골정부, 몽골농업개발지원센터, 대성그룹 사업장 등
- 참 석: 김영만 농수산위원장

- 바다숲 가꾸기 선포식
 - 일 시 : 2009. 7. 10(금), 10:00
 - 장 소 : 경주 양포항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주 천북일반산업단지 발전협의회장 이·취임식
 - 일 시 : 2009. 7. 14(화), 14:00
 - 장 소 : (주)한솔강건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 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 일 시 : 2009. 7. 16(목), 11: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상북도특수임무수행자회 독도사진전 개막식
 - 일 시 : 2009. 7. 20(월), 09:20
 - 장 소 : 도청 현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세계옹기문화엑스포 울산시의회 의원홍보단 내방
 - 일 시 : 2009. 7. 22(수),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북운동본부 출범식
 - 일 시 : 2009. 7. 22(수), 15:30
 - 장 소 : 경산시민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경상북도 여성정책 미래포럼
 - 일 시 : 2009. 7. 23(목), 10:40
 - 장 소 :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한국국학진흥원 이사회
 - 일 시 : 2009. 7. 23(목), 16:30
 - 장 소 : 한국국학진흥원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 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 개막식
 - 일 시 : 2009. 7. 24(금), 15:00
 - 장 소 : 왕피천 엑스포공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제20회 전국 세팍타크로대회
 - 일 시 : 2009. 7. 24(금), 11:00
 - 장 소 : 영천실내체육관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대회
 - 일 시 : 2009. 7. 28(화), 10:30
 - 장 소 : 울진 염전해수욕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해수욕장 손님맞이 한마음 다짐대회
 - 일 시 : 2009. 7. 28(화), 19:00
 - 장 소 : 울진 망양정해수욕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 일 시 : 2009. 7. 30(목), 15:00
 - 장 소 : 제주도의회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9 경북민속문화의 해 사업추진 보고회
 - 일 시 : 2009. 7. 30(목), 17:00
 - 장 소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 세계로봇올림피아드협의회
 - 일 시 : 2009. 7. 31(금), 11:00
 - 장 소 :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 참 석 : 김응규 부의장
- 제10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 일 시 : 2009. 8. 4(화), 19:00
 - 장 소 :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북지회장 이·취임식
 - 일 시 : 2009. 8. 6(목), 11:00
 - 장 소 : 안동회관
 - 참 석 : 이재철 통상문화부위원장
- 제40차 경북지구 JC회원대회
 - 일 시 : 2009. 8. 8(토), 19:00
 - 장 소 : 왕피천 엑스포공원
 - 참 석 : 김응규 부의장
-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도의회 성명서 발표
 - 일 시 : 2009. 8. 10(월), 16:30
 - 장 소 : 대구시청 상황실(기자회견장)
 - 참 석 :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고고학 자료로 본 이서국이야기 기획전시 기념 초청 강연회
 - 일 시 : 2009. 8. 11(화), 14:00
 - 장 소 : 문화재연구원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 이스라엘국회 친선축구대표단 환영오찬
 - 일 시 : 2009. 8. 11(화), 12: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식
 - 일 시 : 2009. 8. 15(토), 10:00
 - 장 소 : 상주문화회관
 - 참 석 : 김응규 부의장
-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 및 충무시설 위문
 - 일 시 : 2009. 8. 17(월), 15: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충무시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9 을지연습 참관 및 위문품 전달
 - 일 시 : 2009. 8. 18(화) 14:00
 - 장 소 : 도청 충무시설 종합상황실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운영·행정보건복지·교육환경·농수산위원장
- 김대중 전대통령 합동 조문
 - 일 시 : 2009. 8. 19(수), 17:00
 - 장 소 : 도청강당 분향소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도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 LED-IT 융합산업화연구센터 MOU 조인식 및 제막식
 - 일 시 : 2009. 8. 19(수), 15:00
 - 장 소 :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 참 석 : 이상호 부의장
- 동남권 신공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세미나
 - 일 시 : 2009. 8. 21(금), 13:30
 - 장 소 : 경남 밀양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김응규 부의장

VI. 5분 자유발언

□ 2009년 8월 26일(수) 제23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한혜련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영천 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의학은 세계 각국이 새로운 의약체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작금에 있어 한방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웰빙 트렌드의 부각으로 안전한 한약재 유통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1일 동의보감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게 됨으로써 우리 한의학의 세계화와 더불어 경북 한방산업 진흥의 계기를 마련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우리 대구·경북은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거점의 탄생을 의미하는 동시에 경북의 의료산업 메카로 불릴 날도 정말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 지역인 신서지구에 인접하고 있는 영천시로서는 다양한 양·한방산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약초의 재배와 생산 유통을 주도하여 한방의료클러스터의 핵심 축으로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환경변화와 기회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대적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한방특구로서의 제 역할을 담당해 낼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바이오산업 및 의학 첨단기술의 집적 추구를 하고 있는 데에 반해 한약유통업소가 150개에 이르고 있고, 전국 한약재 유통의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한약재 도매시장인 영천이 제대로

된 한약 종합처리장 시설이 마련되지 못하여 마냥 전근대적 방식으로 포전매매나 흥정에 의한 거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첨단의료산업의 메카 지향 차원에도 역행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천시는 지난 2005년 9월에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10월 12일에는 한약재 전시관을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한약재 유통량이 7600톤으로 국내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한약 유통업체 150개소와 제약회사 20개소, 한약 제조업 16개소가 밀집해 있는 국내 한약유통 거대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한약유통 중심지로서 한약 특구지역의 약초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매기능 설치와 함께 약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시설 설치를 통하여 고품질 안전성이 검증된 약초 유통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더욱 불거지면서 신뢰할 만한 유통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한약재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초종합처리장이 건설되면 선별포장 등으로 불량약초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여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과 차별화된 경매로 상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투명한 한약재 거래로 인하여 소비자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경북도가 첨단의료산업의 메카로 거듭남에 있어서 영천한방특구가 한약재 유통 투명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첨단화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이루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하여 영천에 전국 최초의 약초종합처리장 건립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경북이 의료산업 메카로 비상하려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 차원의 한의학 유통합리화와 약초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복합단지에 필요한 신약과 한약 개발에 쓰이는 약재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약초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8월 26일(수) 제23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윤창욱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창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과 차질 없는 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계속되는 ‘보릿고개’라는 가난을 극복하고자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잘 살아보자’라는 전 국민적인 의식 개혁과 환경개선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최빈국 이었습니다만 훌륭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노력한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발전 과정과 현재,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가 구미에서 개최됩니다.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개최되는 새마을박람회는 ‘새마을, 내일을 만드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새마을을 배우기 위한 저개발 국가의 지도자와 유학생,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를 비롯한 도내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최근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아프리카의 UN 산하기관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라고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이 저개발 국가의 발전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본받아야 될 국가로 한국을 거론하면서 저개발 국가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절대 빈곤과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북도가 새마을운동을 재조명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녹색성장의 시대입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은 녹색혁명을 주도하고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 등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로 낭비와 체면의 문화를 녹색문화로, 경쟁과 분열의 사회를 녹색사회로, 무질서와 퇴폐, 불건전한 의식을 건강한 녹색의식으로 발전시키는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어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는 3대가 함께 손을 잡고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고 새마을운동이 세계로 나아가는 힘찬 발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가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촉구합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두 명이 사망했고 약 3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신종인플루엔자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9월에, 그리고 10월에는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뿐만 아니라 안동국제탈춤축제, 풍기인삼축제, 봉화송이축제 등 시·군별로 다양한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확산 방지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를 비롯하여 도내의 다양한 축제를 찾는 내·외국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는 금년도 경북도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백만 도민과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상천 의장님이 전국 시·도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16개 시·도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8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는 전국단위 행사로 개막식에 VIP 등 많은 분들이 초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옹도 경북을 알리고 녹색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개막식이 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8월 26일(수) 제23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송필각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칠곡 출신 송필각 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현안의 하나인 도민의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구에 인근 한 경북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도민의 화장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화장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7년 말 현재 경북의 화장률은 45.8%로 전국 화장률에 비해 낮지만 2000년의 20%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화장장은 포항 2개소와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울릉에 각 1개소로 9개 시·군에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종합병원에 입원 중 고인이 되신 도민들이나 화장장이 없는 칠곡군을 비롯한 14개 시·군에서는 인근 지역이나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므로 많은 도민이 인근 대구시의 대구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요금입니다. 대구화장장의 이용요금은 대구시민은 9만 원인데 비하여 경북도민에게는 4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 대구화장장 이용률은 경북도민은 2460건으로 전체 1만 135건의 24.3%, 약 11억 7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도 7월까지 1157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립화장장을 이용한 대부분 대구시민의 최종 장지는 다시 도내의 봉안시설이나 공원묘지 또는 가족묘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례문화의 특성상 대부분의 고향 선산이나 가족묘지와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경북도민이 대구시립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대구시민과 같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민은 화장장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고향과 선산이 있는 도내로 오는 반면에 경북도민의 입장에서는 5배의 많은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대구시가 분리되기 전에는 모두가 경북이었습니다. 고향과 선산이

경북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같은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여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경북과 대구의 경제통합의 취지와도 맞지 않은 소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봅니다.

많은 시립묘지가 도내에 있으며 대부분의 대구시민이 도내의 봉안시설과 가족 또는 공원묘지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지사는 대구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구화장장을 이용하는 도민이 차별을 받지 않고 같은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이 되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핏줄이 같은, 고향이 같은 도민들이 화장장 이용에 있어 차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내 화장장 이용요금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 주민 여부에 따른 차별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용요금과 해당지역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칠곡군과 근거리에 있는 의성군 화장장은 4배, 김천시 화장장은 6배, 경주시립화장장은 무려 8배를 받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화장률에 비하여 도내의 화장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차별은 화장시설이 없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차별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별도 도에서 행정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차제에 도지사께서는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초자치단체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한 도립화장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의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화장장 건립이 어렵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심각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지역현안에 대하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칠곡군 동명지역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연결된 대구 도심생활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동명면은 전체 면적의 56%가 그린벨트지역이며 전체 공원묘지 230.7ha 가운데 대구시의 가족묘지와 공동묘지가 168.7ha로 73.1%나 됩

니다.

자연녹지 그린벨트와 1981년 경상북도에서 대구시가 분리되기 전에 지정한 공동묘지로 인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가 심화되어 왔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1년 대구시로 편입된 대구시 북구 칠곡 지역이 인구 25만 명의 거대한 신도시 지역으로 발전한 반면 동명면은 인구 6400명의 초라한 농촌지역으로 변하여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동명면 지역까지 연장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도지사께서는 그동안 소외받아왔던 주민들의 입장에서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 동명면 지역의 발전과 나아가서 인접하고 있는 칠곡군의 다른 지역과 구미지역까지 연계 발전시켜 1인 1차의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미래발전계획을 구상하여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동명면 연장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동명지역의 학군조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대구광역시와 연결된 코앞의 희망하는 좋은 학교를 두고서도 다른 학군이라는 이유로 진학을 못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학군조정이나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조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나약한 농촌주민들의 2세 교육을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9월 8일(화) 제23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권인찬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안동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권인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아 다녀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산이 많고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임야 면적은 65%인데 도내 전체 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은 73%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 바로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예년에 비해 오랜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많은 산림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 발생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오랜 가뭄과 건조한 날씨, 강한 돌풍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골프장 건설이니 뭐니 하여 무분별하게 나무를 도려내고 개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수익성도 보장되지 않고 공익적 가치도 없는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만 사고 있는 경북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북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택지개발이 5곳에 5647억 원, 산업단지 4곳에 1929억 원, 영천 청통골프장 630억 원, 위·수탁 사업 3곳에 277억 원 등 총 8483억 원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북개발공사 수권자본금 1600억 원 보다 5.3배나 큰 규모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3년까지 경북도내 골프장은 9개소에 불과했으나, 2008년 12월말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는 골프장은 모두 47개소입니다. 경북은 경기도의 139개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골프장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46개소, 전국 제일의 휴양지인 제주도 45개소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골프장 사업을 벌이고 있는가를 극명하

게 보여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개발공사는 영천 청통면 송천리, 원촌리, 치일리 일대에 73만 9000m²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대중제 9홀 규모로 약 224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불과 2년만에 18홀 규모로 확장·변경하면서 무려 3배에 가까운 630억 원의 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골프장 사업 확장 건설로 인해 청통면민들은 농수용과 식수용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로 3년 동안 총 63건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간업체들도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한 달에 한두 건씩이나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포항시 송라제니스, 김천시 베네치아, 김천시 애플밸리 등이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경상북도의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을 위주로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골프장이 많아서 더 이상 건설할 필요가 없는데다, 민간업체들도 무더기로 부도가 나고 있는 현실에서 공기업이 뒤늦게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볼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경북개발공사의 방만한 사업 경영은 이미 수차례 행정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되었음에도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자세이며, 이에 대해 집행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은 우리 경북의 산림을 훼손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산불과 홍수까지 야기 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공기업다워야 합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의 원성만 일으키는 골프장 사업을 전면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9월 8일(화) 제23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진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영덕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에서 해파리떼가 출몰하면서 어장들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이러한 피해가 동해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연구원에 따르면 여름철 우리나라 인근의 해파리 개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액도 연간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양자강 하류에서 발생한 해파리가 조류를 타고 한국 연안으로 대량 유입되었으며, 6월 20일 이후 서·남해안에 출현한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가 예년에 비해 최고 10배 이상의 개체가 출현하는 등 이상 증식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동해안까지 북상하여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파리떼의 습격이 해양 오염으로 인한 산소 부족과 수온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그 피해지역 및 대상이 매우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에서는 관련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남, 충남, 전남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해파리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공식 요청, 해파리 어업피해 대책반 구성·운영 및 해파리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피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동해안 어민들이 해파리로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에 체계적인 대책이 한시바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 8월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해파리 어업 피해대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및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를 포함한 지원조치 방안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현재까지 해파리로 인한 조업중단 피해사례를 명확히 조사하고, 또 그에 따른 어민들의 지원 방안으로 영어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기한을 연기해 주고 해파리를 매입하는 방안, 또 각 어선에 해파리 파쇄기 설치 등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 차원의 전면적인 상황 파악과 더불어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9월 8일(화) 제23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이상용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등학교 시력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의 생각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시력이 나빠 안경을 쓰고 있지만 근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시력 관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소아·청소년 시기에 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곧 평생의 시력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은 조기교육의 영향으로 많은 책을 보느라 눈을 혹사하는 일이 많고, 가정에서도 게임기나 컴퓨터 등을 가까이 함으로써 눈의 피로를 풀어줄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어린이 눈 질환의 특징은 하나 이상의 질환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정기검진이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에는 시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사춘기 전까지는 6개월에 한번 씩 안과 검진을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적절한 시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긴장감과 스트레스, 불안감이 심해지고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을 연쇄적으로 일으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떨어트리게 되고, 하나 이상의 질환이 병행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초등학생들의 적절한 시력 관리에 대하여 근본적인 지원제도가 전무하고, 문제의 심각성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양군 입암초등학교의 경우 총학생수 71명 중에서 안경 착용대상이지만 안경을 미착용한 학생수가 19명으로 전체의 27%에 달하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18명이고, 저소득층 학생이 아닌 학생이 1명입니다. 동 지역

일월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총학생수 97명 중에서 안경 착용대상 학생수는 29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하며, 그 중에서 안경 미착용 학생수가 총 18명입니다.

물론 도내의 모든 시·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영양군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먼저 시력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반적으로 지역 안과병원의 부재와 지원제도의 부실, 학부모들의 무관심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도내 병·의원 및 보건기관의 안과 현황은 청송군과 영양군의 경우 전무하며, 칠곡군을 제외한 다른 군도 1개소 정도로 너무나 암울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하여 구강검사, 뇨검사, 혈액검사 및 흉부검사, 키·몸무게·시력측정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치과검진과 관련하여서는 예산지원이 많으나 안과관련 질환에 대한 검진이나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양군 일월초등학교 이훈영 교장선생님, 입암초등학교 이승채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학교운영비를 절감한 100만 원 정도의 자체 경비로 안경 착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은 기타 농어촌 초등학교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 교장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안과질환 및 적절한 시력관리는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나 자체의 노력만으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된다하더라도 경북도와 교육청 차원에서 단위학교에 대한 안과검진과 지속적인 시력관리를 위한 안경착용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욱 더 시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정상적인 눈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습장애 등 2차적인 문제들이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안과병원 하나 없는 어려운 농촌의 현실과 그 사이에서 방치되어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시력관리에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 조 례 안 : 9건
- ☐ 예 산 안 : 2건
- ☐ 동 의 안 : 2건
- ☐ 기 타 안 : 1건

□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9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330명”을 “4,42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81명”을 “1,887명”으로 하며, 제2호 중 “2,310명”을 “2,400명”으로 한다.

별표2 중 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율	17%이내	83%이상	30%이내	70%이상

3. 기능직공무원

구 분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비율	6%이내	25%이내	32%이내	24%이내	13%이상

5.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이내	3%이내	6%이내	8%이내	15%이내	31%이내	36%이상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4,330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881명</u>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 공무원의 정원 : <u>2,310명</u> 3. (생략) 4. (생략) [별표2]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2. 연구·지도직공무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연구직</th><th colspan="2">지도직</th></tr><tr><th>연구관</th><th>연구사</th><th>지도관</th><th>지도사</th></tr><tr><td>비율</td><td><u>15%이내</u></td><td><u>85%이상</u></td><td><u>30%이내</u></td><td><u>70%이상</u></td></tr></table> 3. 기능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h>10급</th></tr><tr><td>비율</td><td><u>6%이내</u></td><td><u>17%이내</u></td><td><u>19%이내</u></td><td><u>29%이내</u></td><td><u>29%이상</u></td></tr></table> 5. 소방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소방정 이상</th><th>소방령</th><th>소방경</th><th>소방위</th><th>소방장</th><th>소방교</th><th>소방사</th></tr><tr><td>비율</td><td><u>1%이내</u></td><td><u>3%이내</u></td><td><u>5%이내</u></td><td><u>7%이내</u></td><td><u>15%이내</u></td><td><u>32%이내</u></td><td><u>37%이상</u></td></tr></table>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u>15%이내</u>	<u>85%이상</u>	<u>30%이내</u>	<u>70%이상</u>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u>6%이내</u>	<u>17%이내</u>	<u>19%이내</u>	<u>29%이내</u>	<u>29%이상</u>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u>1%이내</u>	<u>3%이내</u>	<u>5%이내</u>	<u>7%이내</u>	<u>15%이내</u>	<u>32%이내</u>	<u>37%이상</u>	제2조(정원의 총수)<u>4,426명</u>..... 1. : <u>1,887명</u> 2. : <u>2,400명</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별표2]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2. 연구·지도직공무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연구직</th><th colspan="2">지도직</th></tr><tr><th>연구관</th><th>연구사</th><th>지도관</th><th>지도사</th></tr><tr><td>비율</td><td><u>17%이내</u></td><td><u>83%이상</u></td><td><u>30%이내</u></td><td><u>70%이상</u></td></tr></table> 3. 기능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h>10급</th></tr><tr><td>비율</td><td><u>6%이내</u></td><td><u>25%이내</u></td><td><u>32%이내</u></td><td><u>24%이내</u></td><td><u>13%이상</u></td></tr></table> 5. 소방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소방정 이상</th><th>소방령</th><th>소방경</th><th>소방위</th><th>소방장</th><th>소방교</th><th>소방사</th></tr><tr><td>비율</td><td><u>1%이내</u></td><td><u>3%이내</u></td><td><u>6%이내</u></td><td><u>8%이내</u></td><td><u>15%이내</u></td><td><u>31%이내</u></td><td><u>36%이상</u></td></tr></table>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u>17%이내</u>	<u>83%이상</u>	<u>30%이내</u>	<u>70%이상</u>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u>6%이내</u>	<u>25%이내</u>	<u>32%이내</u>	<u>24%이내</u>	<u>13%이상</u>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u>1%이내</u>	<u>3%이내</u>	<u>6%이내</u>	<u>8%이내</u>	<u>15%이내</u>	<u>31%이내</u>	<u>36%이상</u>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u>15%이내</u>	<u>85%이상</u>	<u>30%이내</u>	<u>70%이상</u>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u>6%이내</u>	<u>17%이내</u>	<u>19%이내</u>	<u>29%이내</u>	<u>29%이상</u>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u>1%이내</u>	<u>3%이내</u>	<u>5%이내</u>	<u>7%이내</u>	<u>15%이내</u>	<u>32%이내</u>	<u>37%이상</u>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u>17%이내</u>	<u>83%이상</u>	<u>30%이내</u>	<u>70%이상</u>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u>6%이내</u>	<u>25%이내</u>	<u>32%이내</u>	<u>24%이내</u>	<u>13%이상</u>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u>1%이내</u>	<u>3%이내</u>	<u>6%이내</u>	<u>8%이내</u>	<u>15%이내</u>	<u>31%이내</u>	<u>36%이상</u>																																																																														

[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 계		4,426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1,373	-			
	2~3급	1		1		
	3 급	9	8		1	
	3~4급	1	1			
	4 급	71	51	7	4	9
	5급이하	1,291	-			
별 정 직	소 계	42	-			
	1급상당	1	1			
	3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이하	37	-			
연 구 직	소 계	189	-			
	연구관	31			29	2
	연구사	158	-			
지 도 직	소 계	27	-			
	지도관	8			8	
	지도사	19	-			
소 방 직	소 계	2,400	-			
	소방정	18	2		16	
	소방령이하	2,382	-			
기능직 계		353	-			
교 원	소 계	41	-			
	학 장	1			1	
	교 수	29			29	
	조 교	11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9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업무)”를 “(심의회의의 업무)”로 하고, 제5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는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 중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2항제4호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을 “각 목의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중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써 종업원”을 “상시종업원”으로 하며, “당해 지역내”를 “도내”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동법시행령 제19조”를 “영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대부료의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그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하고,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의 규모”를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한다.

제50조 중 “공하기”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56조제2호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를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로 한다.

제57조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하나에”로 한다.

제64조제4항 중 “안된다”를 “아니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 제24조 · 제38조제1항 · 제38조제2항 · 제38조제3항 · 제38조제4항 · 제38조제5항 및 제41조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 재산”으로 한다.

제18조 · 제19조제2항 및 제20조 중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 제21조 · 제22조제1항 · 제22조제2항 · 제22조제3항 및 제22조제5항 중 “행정 ·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생략)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생략)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u>심의회</u>----- -----.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행정재산----- ----- ----- 4. 일반재산----- 5. (현행과 같음) ②----- ----- 심의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2. 「건축법」 제57조제1항-----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일반재산 ----- -----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장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제3장 <u>행정재산</u>	
제18조(관리 및 처분)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u>행정재산·보존재산</u> 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u>재산관리관</u> ----- <u>행정재산</u> ----- -----.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산·보존재산</u> 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u>행정재산·보존재산</u>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산</u> 을 사용·수익허가----- ----- -----. ② <u>행정재산</u> ----- -----.	
제20조(사용·수익허가) <u>행정재산·보존재산</u> 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u>행정재산</u> ----- -----.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u>행정·보존재산</u> 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u>행정재산</u> ----- ----- -----.	
제22조(<u>행정·보존재산</u> 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보존재산</u> 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22조(<u>행정재산</u> 의 관리위탁) ①----- ----- <u>행정재산</u> -----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보존재산</u>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 하는 <u>행정·보존재산</u>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 보존재산</u>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 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생략)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u>행정·보존재산</u>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23조(<u>잡종재산</u> 대부분의 준용) (생략) 제4장 <u>잡종재산</u>	----- ----- ----- -----. ②----- -----<u>행정재산</u>----- ----- ----- -----<u>행정재산</u>----- ----- -----. ③-----<u>행정재산</u>----- ----- ----- ----- ----- ----- ----- -----. ④(현행과 같음) ⑤----- ----- ----- -----<u>행정재산</u>----- ----- -----. 제23조(<u>일반재산</u> 대부분의 <u>준용</u>) (현행과 같음) 제4장 <u>일반재산</u>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4조(연고권 배제)잡종 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일반 재산----- ----- ----- -----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②(생략)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생략) 1. ~ 5. (생략) 6.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써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②(현행 과 같음) ③ ----- ----- -----. 1. ~ 2. (현행과 같음) 3.주거용 건물----- ----- ----- ----- -----. ④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상시종업원----- ----- ----- -----도내----- -----	제 28 조 (대 부 료 의 요율) ① ~ ②(현 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 하는 경우. 다만, --(이하 개정안과 같음)----- ----- -----. ④(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	

현행	개정안	수정안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 사.(생략) 2. ~ 3.(생략) ②(생략)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가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u>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u> 2. <u>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u> 3. <u>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u>	----- ----- ----- ----- ----- 1. (현행과 같음) 가. ----- ----- --- <u>기획재정부장관</u> --- ----- ----- 나. ~ 사.(현행과 같음) 2. ~ 3.(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그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 ----- ---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그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생략)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u>잡종재산</u>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u>일반재산</u>----- ----- ----- ----- -----. 1. ~ 4.(현행과 같음) ②----- ----- ----- ----- -----<u>일반재산</u>----- ----- ----- -----. ③----- <u>일반재산</u>-----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u>일반재산</u>----- ----- ----- -----. ⑤----- ----- -----<u>일반재산</u>----- -----	

현행	개정안	수정안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략) 1.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 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 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1989년 1월 24일 이 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 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 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 ----- ----- ----- ----- ----- ----- ----- ----- ----- 「건축법」 제57조제1항-- ----- ----- ----- ----- -----.	
	5.----- -----	

현행	개정안	수정안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u>제1호의 규모</u>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u>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도지사·부지사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u>공하기</u>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생략) 2. <u>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u> 3. ~ 8. (생략)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 -----<u>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u>----- -----. 제41조(신탁의 종류) ----- -----<u>일반재산</u>----- ----- ----- ----- -----. 제50조(정의) ----- ----- -----<u>제공하기</u>-----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 1. (현행과 같음) 2. <u>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u> 3. ~ 8. (현행과 같음) 제57조(사용료의 면제)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1. ~ 3. (현행과 같음) 4. <u><삭제></u>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③ (생략)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u>안된다</u>.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u>아니된다</u>.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9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관사무)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분쟁 신청사건의 알선 및 조정업무
2. 환경분쟁 신청사건의 재정업무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상임위원을 1명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4. 환경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 피해액의 산정
3.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5조(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운영 등) ①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정위원회 : 3명
2. 재정위원회
가. 조정가액 5천만원 이하 : 3명
나.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5명

②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6조(관계전문가 등)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거나 감정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보상금·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는 자, 조정·재정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및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경상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한다.

③ 알선·조정·재정을 구하는 금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상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재정문 작성, 서식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수 수 료 (제8조 관련)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알선 신청	10,000원
조정 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재정 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참가 신청	1. 조정절차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증거 보전 신청	5,000원
비 고 :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생 략) ④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생 략) ④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9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립공원의 지정·관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점용료 :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중 “공원”을 “경상북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5조 중 “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시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를 “환경해양산림국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진흥국장, 행정지원국장, 농수산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농수산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공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기) 제9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6조 중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장료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4조제2호 중 “점용기관”을 “점용기간”으로, “당해년도”를 각각 “당해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립공원의 지정·관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 7. (생략) 8. 시설사용료: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점용료: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시설사용료: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에따른----- ----- ----- 9. 점용료: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9. (생략)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경상북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별표 1-----.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u>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도지사 및 당해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u>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u> ----- ----- ----- ----- -----.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 <u>시장·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u>
제6조(관리사무소)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u>제5조의 규정에 의한</u>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사무소)----- ----- <u>제5조에 따른</u> ----- ----- ----- -----.	
제8조(설치) <u>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u> <u>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제8조(설치) <u>법 제9조에 따라</u> ----- ----- -----.	
제9조(조직)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u>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u>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제9조 (조직)①----- <u>명</u> ----- <u>명</u> ----- <u>명</u> ----- <u>제4항에 따라</u> -----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u>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② ----- ----- <u>환경해양산림국장</u> <u>으로 한다.</u>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③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진흥국장, 행정지원국장, 농수산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u><신설></u> <u><신설></u> ④ (생략) 1. ~ 2. (생략) <u><신설></u> ⑤ (생략) 제10조(임기)제9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행정지원국장, 농수산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 ----- -----다음 각 호의 자----- ----- -----. 1.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공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임기) 제9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2조(기능)① (생략) 1. <u>도립공원 계획의 결정</u> 2. <u>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u> 3. <u>공원보호구역의 지정</u> 4. <u>공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제12조(기능)① (현행과 같음) 1. <u>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u> 2. <u>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u> 3. <u>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사항</u>	
제13조(회의)① (생략) ② <u>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u>	제13조(회의)① (현행과 같음) ② <u>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u>	
제14조(분과위원회)① (생략) ② <u>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u> ③ (생략)	제14조(분과위원회)① (현행과 같음) ② ----- ----- ----1명-----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실비변상)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 <u>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u>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변상)----- ----- ----- ----「 <u>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u> 」----- ----- --.	
제18조(입장료)입장료의 징수기준은[별표3]과 같다.	제18조(입장료)----- -----별표 3-----.	
제19조(입장료의 징수등)① (생략) ② 입장료 서식은 [별지 제1호] 및[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9조(입장료의 징수등)① (현행과 같음) ② 입장료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20조(시설사용료)①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20조(시설사용료)①----- -----별표 4----- ----. ② -----별지 제3호 서식---.	
제21조(입장료 등의 면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하지 아니한다. 1. ~10. (생략)	제21조(입장료 등의 면제)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사용료를-----. 1. ~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② 당해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내 사찰에 상시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23조(점용료)①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 ③ (생략)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생략) 1. (생략) 2. 점용기관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 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삭제> 제23조(점용료)①----- -----같은 법 시행규칙-----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점용기간----- -----당해연도----- ----- -----당해연도----- -----.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9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 등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고 기업인의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신 성장 기업, 여성기업 또는 여성 경제인

2. 그 밖에 중소기업 발전, 노사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또는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대상
2. 산업평화대상
3. 고용대상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대상) ①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또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기업, 기업인이나 근로자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기업인이나 근로자
3. 기타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기업인이나 근로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인이나 근로자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 및 신용 보증 특례 지원
2.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3. 도의 공공시설(문화·예술·체육 등)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4.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한 홍보
5. 도의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우선예우
6. 기업홍보 표지판 설치지원 등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제외대상) ① 도지사는 우수 기업인이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2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 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세 탈루·은닉정보가 포착된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관리) ① 도지사는 우수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 동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기업 활동 지원

제9조(창업 및 설비지원) 도지사는 기업의 창업 및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입지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공급하도록 산업단지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부지대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마케팅 및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도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중소기업제품 육성) ① 도지사는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우수제품을 “경북PRIDE상품으로 선정하여 도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육성·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인력양성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산·학·연 협력사업,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다양한 인력양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국제화의 촉진) ① 도지사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 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기업관련 단체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제16조(기업관련 단체지원) ①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업의 날 지정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인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경영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근로자 복지 지원)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장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 운영

제19조(설치)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지원과 애로 및 규제 사항을 해소·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애로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와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7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중단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의 임직원
2. 정부 및 도의 출연기관 임직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기업인 관련 단체 대표
5. 기업 경영과 관련된 학과 대학교수
6. 도의회 의원
7. 경제관련 언론인

8.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업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9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전반에 관한 사항”을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2호 가목을 제3호로 나목을 제4호로 제3호를 제5호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3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9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7조 전문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위원회에 건축전문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전문위원회(이하 “각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각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도 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2.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
 3. 공공디자인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
 4.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 제2항을 제7조 제3항으로 하고 “조정위원회”를 “각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건축전문위원회는 도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다.
- 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⑥ 공공디자인전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공디자인 정책 등에 관한 사항
 - 2. 건설, 건축 및 도시 관련 경관 및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3. 공공디자인전문위원회의 자문대상,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⑦ 각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제1항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회 및 각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2조로 하고 “도지사는”을 “도지사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3조로 하고 “전문위원”을 삭제한다.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7조를 제15조로 하고 “위원과 전문위원”을 “각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9조를 제17조로 하고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9. 10. 2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기능) ① (생략) 1.(생략) 2.영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09.3.9> 가.(생략) 나.(생략) 3.(생략) ②~④ (생략) 제7조(소위원회) 제8조(전문위원) 제3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9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 <u>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u>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3장 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위원회에 건축전문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전문위원회(이하 "각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u>조정위원회</u>의 직무를 총괄하고 <u>조정위원회</u>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신 설)	② <u>각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건축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도 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u> 2. <u>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u> 3. <u>공공디자인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u> 4. <u>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 ③-----<u>각 전문위원회</u>----- -----<u>각 전문위원회</u>----- ----- -----. ④ <u>건축전문위원회는 도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다.</u> (신 설)	⑤ <u>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u> ⑥(개정안과 같음) 1.~3.(개정안과 같음)
--	--	---

(신 설)	⑤ 공공디자인전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공공디자인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 건축 및 도시 관련 경 관 및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3. 공공디자인전문위원회의 자문 대상,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 할 수 있다	
(신 설)	⑥ 각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을 거친 사항은 도 위원회 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개정안과 같음)
제10조(비용부담) ①~② (생략)	제8조(비용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②~③ (생략)	제9조(회의) ① 위원회 및 각 전문위원회-----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② (생략)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록) (생략)	제11조(회의록) (현행과 같음)	

<u>제14조(위원의 해촉)</u> <u>도지사</u>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5 (생략)	<u>제12조(위원의 해촉)</u> <u>도지사</u> 및 <u>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u>은----- ----- -----. 1~5 (현행과 같음)	
<u>제15조(비밀유지)</u> <u>각 위원회의</u> <u>위원</u>, <u>전문위원</u>, <u>간사</u> 및 <u>서기</u>와 <u>기타 위원회의 업무</u>에 <u>관여한 자</u>는 <u>그 업무 수행</u> 상 <u>알게 된 비밀</u>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u>제13조(비밀유지)</u> <u>각 위원회의</u> <u>위원</u>,----- ----- ----- -----.	
<u>제16조(자료제출 등)</u> (생략)	<u>제14조(자료제출 등)</u> (현행과 같음)	
<u>제17조(실비보상 등)</u> 공무원이 아닌 <u>위원과 전문위원</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제15조(실비보상 등)</u>----- -----<u>각 위원회 위원</u> ----- -----.	
<u>제18조(건축문화상 등)</u> ①~② (생략)	<u>제16조(건축문화상 등)</u> ①~② (현행과 같음)	
<u>제19조(시행규칙)</u>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u>위원회의</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17조(시행규칙)</u>----- -----<u>각 위원회</u>----- -----.	

(<u>신 설</u>)	<u>부 칙</u> ①(<u>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09. 10. 2부터 시행한다. ②(<u>경과조치</u>)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9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3조중 “소방서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
에게 추천한다”를 “소방서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소
방서장에게 추천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은 서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20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재학중인 학교장”을 “대원”으로 하고,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공
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대원으로 3년이상(타지역 경력 포함)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2.(생략)	제2조 (장학생의 자격)----- ----- -----2년----- ----- -----. 1. ~ 2.(현행과 같음)	제3조 (추천)----- ----- ----- ----- -----소방서 관할구역 별 장학생 정원의 범위내에 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 (추천)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소방서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 (추천)----- ----- -----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6조 (장학금액) <u>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200만원으로 한다.</u>	제6조 (장학금액) <u>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최고 금액은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200만원 이내로 한다.</u>	
제7조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생략)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공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원----- ----- -----.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원----- ----- -----.(단서삭제) ③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9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검 직 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 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검 직 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 직 기관·단체의 정 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영 리 행 위의 제 한)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 리 행 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 어 조 합 법 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 법 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①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		보수 (택일)	연 월	만원 만원
		주소				전화번호	
	②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		보수 (택일)	연 월	만원 만원
		주소				전화번호	
	③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		보수 (택일)	연 월	만원 만원
		주소				전화번호	
	④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		보수 (택일)	연 월	만원 만원
		주소				전화번호	
	⑤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		보수 (택일)	연 월	만원 만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9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보건 서비스의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사회복지·보건 사업의 개발 및 육성
3. 사회복지·보건서비스의 인적자원 개발
4. 사회복지·보건 서비스의 운영·평가에 관한 지원
5. 사회복지·보건 관련 자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6. 사회복지·보건 관련 공공재원의 지원기준 개발
7. 사회복지·보건서비스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
8.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9. 도와 시·군으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받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8호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

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8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5호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규정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대표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⑤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서를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출연금 교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기금) ① 재단은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이하"자치단체"라 한다)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③ 재단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 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도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3. 재단의 사업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8조(확인·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사무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재단은 설립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산안

-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9. 8(화)

200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경 상 북 도 의 회

2009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지사

2.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 8.14, 경상북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9. 1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 9. 2 : 상정·질의·토론)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 9. 3 : 상정·질의·토론)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 9. 4 : 상정·토론·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 현 기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4. 예산편성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
-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성장산업 기반조성 지원 등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5,404,226	100.0	4,813,710	100.0	590,516	12.3
일 반 회 계		4,657,849	86.2	4,099,400	85.2	558,449	13.6
특 별 회 계		746,377	13.8	714,310	14.8	32,067	4.5
	의료급여기금운영	380,710	7.0	356,764	7.4	23,946	6.7
	치 수 사 업	31,881	0.6	27,100	0.6	4,781	17.6
	경북도립대학운영	8,281	0.2	7,409	0.2	872	11.8
	광 역 교 통 시 설	1,425	0.1	907	0.1	518	57.1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8,780	0.9	46,830	1.0	1,950	4.2
	지역개발기금운영	275,300	5.1	275,300	5.7	0	0.0

2) 총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5,404,226	100.0	4,813,710	100.0	590,516	12.3
자 체 수 입	1,314,502	24.4	1,187,907	24.7	126,595	10.7
지방세 수입	760,000	14.1	760,000	15.8	0	0.0
세 외 수 입	554,502	10.3	427,907	8.9	126,595	29.6
경상적수입	63,853	1.2	63,797	1.3	56	0.1
임시적수입	490,649	9.1	364,110	7.6	126,539	34.8
의 존 수 입	4,089,724	75.7	3,625,803	75.4	463,921	11.3
지방교부세	846,065	15.7	888,098	18.5	△42,033	△4.7
보 조 금	2,966,659	54.9	2,540,705	52.8	425,954	16.8
지 방 채 및 예치금 회수	277,000	5.1	197,000	4.1	80,000	40.6

3) 총괄 세출예산

가) 기능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5,404,226	100.0	4,813,710	100.0	590,516	12.3
일 반 공 공 행 정	794,678	14.7	780,202	16.2	14,476	1.9
공공질서및안전	276,883	5.1	223,318	4.6	53,565	24.0
교 육	7,222	0.1	5,210	0.1	2,012	38.6
문 화 및 관 광	258,836	4.8	221,758	4.6	37,078	16.7
환 경 보 호	487,970	9.0	366,706	7.6	121,264	33.1
사 회 복 지	1,597,223	29.6	1,383,014	28.7	214,209	15.5
보 건	71,118	1.3	64,221	1.3	6,897	10.7
농 립 해 양 수 산	828,378	15.3	772,153	16.0	56,225	7.3
산 업 중 소 기 업	161,950	3.0	142,887	3.0	19,063	13.3
수 송 및 교 통	323,864	6.0	306,874	6.4	16,990	5.5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48,848	4.6	200,939	4.1	47,909	23.8
과 학 기 술	15,610	0.3	12,920	0.3	2,690	20.8
예 비 비	43,442	0.8	49,982	1.0	△6,540	△13.1
기 타	288,204	5.3	283,526	5.9	4,678	1.7

나) 조직별(총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5,404,226	100.0	4,813,710	100.0	590,516	12.3
의 회 사 무 처	12,202	0.2	12,220	0.3	△18	△0.2
공 보 관	1,942	0.1	1,889	0.1	53	2.8
새 경 북 기 획 단	80,045	1.5	1,158	0.0	78,887	6812.4
도청이전추진단	12,142	0.2	2,177	0.1	9,965	457.6
기 획 조 정 실	492,036	9.1	495,469	10.3	△3,433	△0.7
경제과학진흥국	164,513	3.0	147,569	3.1	16,944	11.5
공 무 원 교 육 원	4,898	0.1	4,660	0.1	238	5.1
감 사 관 실	370	0.0	381	0.0	△11	△2.9
보건복지여성국	1,569,172	29.0	1,433,768	29.8	135,404	9.4
행 정 지 원 국	422,769	7.8	411,650	8.6	11,119	2.7
경 북 도 립 대 학	8,281	0.2	7,409	0.2	872	11.8
환경해양산림국	730,556	13.5	593,806	12.3	136,750	23.0
보건환경연구원	7,429	0.1	7,207	0.2	221	3.1
농 수 산 국	590,802	10.9	551,624	11.5	39,178	7.1
농 업 기 술 원	42,102	0.8	39,607	0.8	2,495	6.3
투 자 통 상 국	65,473	1.2	53,478	1.1	11,995	22.4
관 광 산 업 국	35,716	0.7	30,851	0.6	4,865	15.8
문 화 체 육 국	202,823	3.8	170,903	3.6	31,920	18.7
건설도시방재국	789,119	14.6	688,097	14.9	101,022	14.7
소 방 본 부	171,836	3.2	159,787	3.3	12,049	7.5

다) 성질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5,404,226	100.0	4,813,710	100.0	590,516	12.3
인 건 비	222,525	4.1	217,505	4.5	5,020	2.3
물 건 비	107,947	2.0	102,595	2.1	5,352	5.2
경 상 이 전	2,226,357	41.2	1,982,170	41.2	244,187	12.3
자 본 지 출	2,190,360	40.5	1,856,798	38.6	333,562	18.0
융 자 및 출 자	139,832	2.6	139,832	2.9	0	0.0
보 전 재 원	133,865	2.5	133,865	2.8	0	0.0
내 부 거 래	329,507	6.1	326,754	6.8	2,753	0.8
예비비 및 기타	53,833	1.0	54,191	1.1	△358	△0.7

나. 일반회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657,849	100.0	4,099,400	100.0	558,449	13.6
지 방 세 수 입		760,000	16.3	760,000	18.5	0	0.0
세 외 수 입		251,412	5.4	136,544	3.4	114,869	84.1
	경상적수입	22,828	0.5	22,689	0.6	139	0.6
	임시적수입	228,584	4.9	113,855	2.8	114,729	100.8
지 방 교 부 세		846,065	18.2	888,098	21.6	△42,033	△4.7
보 조 금		2,655,372	57.0	2,249,758	54.9	405,614	18.0
지 방 채 및 예치금 회수		145,000	3.1	65,000	1.6	80,000	123.1

2)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657,849	100.0	4,099,400	100.0	558,449	13.6
일 반 공 공 행 정	518,880	11.1	504,918	12.3	13,962	2.8
공공질서및안전	276,883	5.9	223,318	5.4	53,565	24.0
교 육	3,063	0.1	2,013	0.1	1,050	52.2
문 화 및 관 광	258,836	5.6	221,758	5.4	37,078	16.7
환 경 보 호	487,970	10.5	366,706	9.0	121,264	33.1
사 회 복 지	1,216,513	26.1	1,026,250	25.0	190,263	18.5
보 건	71,118	1.5	64,221	1.6	6,897	10.7
농 립 해 양 수 산	828,378	17.8	772,153	18.8	56,225	7.3
산 업 중 소 기 업	113,170	2.4	96,057	2.3	17,113	17.8
수 송 및 교 통	322,953	6.9	305,967	7.5	16,986	5.6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16,967	4.7	173,839	4.2	43,128	24.8
과 학 기 술	15,610	0.3	12,920	0.3	2,690	20.8
예 비 비	43,442	0.9	49,982	1.2	△6,540	△13.1
기 타	284,066	6.1	279,298	6.8	4,768	1.7

나) 조직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657,849	100.0	4,099,400	100.0	558,449	13.6
의 회 사 무 처	12,203	0.3	12,220	0.3	△18	△0.2
공 보 관	1,942	0.1	1,889	0.1	53	2.8
새 경북기획단	80,045	1.7	1,158	0.0	78,887	6812.4
도청이전추진단	12,142	0.3	2,178	0.1	9,965	457.6
기 획 조 정 실	216,736	4.7	220,169	5.4	△3,433	△1.6
경제과학진흥국	115,733	2.5	100,739	2.5	14,994	14.9
공 무 원 교 육 원	4,898	0.1	4,660	0.1	238	5.1
감 사 관 실	370	0.0	381	0.0	△11	△2.9
보건복지여성국	1,188,462	25.5	1,077,004	26.3	111,458	10.4
행 정 지 원 국	422,769	9.1	411,650	10.0	11,119	2.7
환경해양산림국	730,556	15.7	593,806	14.5	136,750	23.0
보건환경연구원	7,429	0.2	7,207	0.2	221	3.1
농 수 산 국	590,802	12.7	551,623	13.5	39,179	7.1
농 업 기 술 원	42,102	0.9	39,607	1.0	2,495	6.3
투 자 통 상 국	65,473	1.4	53,478	1.3	11,995	22.4
관 광 산 업 국	35,715	0.8	30,851	0.8	4,864	15.8
문 화 체 육 국	202,823	4.4	170,903	4.2	31,920	18.7
건설도시방재국	755,813	16.2	660,090	16.1	95,723	14.5
소 방 본 부	171,836	3.7	159,787	3.9	12,049	7.5

다)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657,849	100.0	4,099,400	100.0	558,449	13.6
인 건 비	219,623	4.7	214,462	5.2	5,160	2.4
물 건 비	103,773	2.2	98,787	2.4	4,987	5.1
경 상 이 전	1,791,267	38.5	1,573,852	38.4	217,415	13.8
자 본 지 출	2,138,033	45.9	1,808,831	44.1	329,202	18.2
용 자 및 출 자	8,832	0.2	8,832	0.2	0	0.0
보 전 재 원	17,900	0.4	17,900	0.4	0	0.0
내 부 거 래	329,507	7.1	326,754	8.0	2,753	0.8
예비비 및 기타	48,914	1.1	49,982	1.2	△1,068	△2.1

다. 특별회계

1)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계	746,377	100.0	714,310	100.0	32,067	4.5
의료급여기금운영	380,710	51.0	356,764	50.0	23,946	6.7
치수사업	31,881	4.3	27,100	3.8	4,781	17.6
경북도립대학운영	8,281	1.1	7,409	1.0	872	11.8
광역교통시설	1,425	0.2	907	0.1	518	57.1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8,780	6.5	46,830	6.6	1,950	4.2
지역개발기금운영	275,300	36.9	275,300	38.5	0	0.0

2)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46,377	100.0	714,310	100.0	32,067	4.5
	세 외 수 입	303,090	40.6	291,363	40.8	11,726	4.0
	경상적 수입	41,025	5.5	41,108	5.8	△83	△0.2
	임시적 수입	262,065	35.1	250,255	35.0	11,810	4.7
	보 조 금	311,287	41.7	290,947	40.7	20,340	7.0
	지 방 채 및 예치금 회수	132,000	17.7	132,000	18.5	0	0.0

3) 특별회계 세출예산

가) 기능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46,377	100.0	714,310	100.0	32,067	4.5
일반공공행정	275,798	37.0	275,284	38.5	514	0.2
교 육	4,159	0.6	3,197	0.5	962	30.1
사 회 복 지	380,710	51.0	356,764	50.0	23,946	6.7
산업중소기업	48,780	6.5	46,830	6.6	1,950	4.2
수 송 및 교 통	911	0.1	907	0.1	4	0.4
국토및지역개발	31,881	4.3	27,100	3.8	4,781	17.6
기 타	4,138	0.6	4,228	0.6	△90	△2.1

나) 조직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46,377	100.0	714,310	100.0	32,067	4.5
기 획 조 정 실		275,300	36.9	275,300	38.5	0	0.0
	예산담당관실	275,300	36.9	275,300	38.5	0	0.0
경제과학진흥국		48,780	7.0	46,830	7.0	1,950	4.2
	에너지정책과	48,780	6.5	46,830	6.6	1,950	4.2
보건복지여성국		380,710	51	356,764	50.0	23,946	6.7
	사회복지과	380,710	51.0	356,764	50.0	23,946	6.7
건설도시방재국		33,306	4.5	28,007	3.9	5,298	18.9
	균형개발과	1,425	0.2	907	0.1	518	57.1
	치수방재과	31,881	4.3	27,100	3.8	4,781	17.6
경북도립대학		8,281	1.1	7,409	1.0	872	11.8

다) 성질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46,377	100.0	714,310	100.0	32,067	4.5
인 건 비	2,902	0.4	3,042	0.4	△140	△4.6
물 건 비	4,174	0.6	3,809	0.5	365	9.6
경 상 이 전	435,090	58.3	408,318	57.2	26,772	6.6
자 본 지 출	52,327	7.0	47,967	6.7	4,360	9.1
용 자 및 출 자	131,000	17.6	131,000	18.3	0	0.0
보 전 재 원	115,965	15.5	115,965	16.2	0	0.0
예비비 및 기타	4,919	0.7	4,209	0.6	710	16.9

라. 지 방 채

○ 발행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명	기 채 선	발 행 액	발 행 조 건		
			이 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계		80,000			
지방교부세감소 및 세입결손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80,000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균분 상 환	도 비

○ 지방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 12월말 잔액			2009년 상 환 액		
	계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합 계	270,604	218,900	51,704	25,559	17,900	7,659
지역개발기금	270,185	218,500	51,685	25,347	17,700	7,647
청사정비기금	419	400	19	212	200	12

마. 채무부담행위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채무부담 행위내용	채무부담 행위액		사유	상환계획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경정	기정		
계				28,983	30,000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어촌어항 관인프라 구축	지방어항 건설	○ 지방어항건설 (수산진흥과)	983	0	지방어항시설 조기 마무리	2010년
지방도 건설 확포장	지방도 확충	지방도 건설	○ 지방도사업 (도로철도과)	15,000	17,000	지방도사업 조기 마무리	"
지방도 확충 및 유지관리	도로 교통망 확충	사리도 확포장	○ 지방도사업 - 사리도확포장사업 (종합건설사업소)	7,700	7,700	"	"
"	도로 교통망 확충	사리도 확포장	○ 지방도사업 - 사리도확포장사업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4,100	4,300	"	"
"	교량 안전 관리	교량및 터널 개보수	○ 지방도사업 - 교량개체사업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1,200	1,000	"	"

6. 검토의견

가. 총괄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8,137억원보다 5,905억원(12.3%)이 증액된 5조
4,042억원임.
- 회계별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994억원보다 5,584억원(13.6%)이 증액
된 4조6,578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43억원보다 321억원(4.5%)이
증액된 7,464억원임.

◆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54,042	100.0	48,137	100.0	5,905	12.3
일반회계	46,578	86.2	40,994	85.2	5,584	13.6
특별회계	7,464	13.8	7,143	14.8	321	4.5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 기정예산 4조994억원보다 5,584억원(13.6%)이 증액된 4조6,578억원임.

나) 세입예산의 자원별 세부내역은

- 지방세는 이번 추경에 변동분이 없으며,
- 세외수입의 순증은 1,149억원으로
 - 재산매각수입 116억원, 잉여금 914억원, 이월금 54억원, 전입금 42억원, 부담금이 12억원 등임.
- 중앙지원금은 3,636억원으로
 - 지방교부세 △420억원, 보조금 4,056억원이며,
 - 주요 내역은
 - 지방교부세 재정 보전분 △702억원
 - 부동산 교부세 163억원
 - 경북도청 신축 지원 100억원
 - 한시생계보호 411억원
 - 하수처리장 설치 269억원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101억원
 -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42억원 등이며,
- 지방교부세감소 및 세입 결손분 지방채 발행은 800억원임.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 내용으로는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부문 686억원
-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부문 1,583억원
- 사회복지, 보건 부문 1,972억원
- 농림해양수산 부문 562억원
-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부문 198억원
-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601억원
- 기타 부문에 4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예비비는 65억원을 감액하였음.

라) 성질별 편성 내용으로는

- 인건비 52억원 증액
-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물건비 50억원 증액
- 일반보상금, 출연금,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이전 2,174억원 증액
-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3,292억원 증액
-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28억원 증액
- 예비비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은 11억원을 감액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 기정 예산 7,143억원보다 321억원(4.5%)이 증액된 7,464억원임.

나) 의료급여기금운영은

-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의료급여사업비) 203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의료급여사업 시·군 부담금 1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민간위탁사업인 의료급여진료비에 239억원을 증액 계상함.

다) 치수사업은

-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하천관리 및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48억원을 증액 계상함.

라) 경북도립대학운영은

- 세입에서 기타회계 전출금 6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등 총 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청소 및 경비용역 등)에서 3억원을 감액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기업지원사업 대응투자비 및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응투자비 등에 증액 계상함.

마) 광역교통시설은

-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5억원을 계상함.

바)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는

-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지역개발사업(시설비) 23억원을 감액하여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양성자 가속기 지원 등)에 30억원, 고효율조명(LED)시범 사업(EXPO공원) 지원에 3억원, DGIST 경북 에너지 기술사업단 설립지원 등에 5억원을 계상함.

다.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1) 지방채

가) 지방채 발행 규모는

- 800억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소 및 세입 결손분으로 충당 될
재원임.

나) 상환방법

- 이율은 변동금리이며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발행.

※ 기재선 : 공공자금관리기금(행정안전부)

2) 채무부담행위

가) 채무부담행위는

- 기정 예산 300억원보다 10억원(3.4%)이 감액된
290억원임.
- 지방어항시설 및 지방도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상환계획은 2010년에 상환 예정임.

라.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수입부문에는 1회 추경을 비롯하여 금번 2회 추경에도 증감부분이 없는데 7월말 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이 당초계획¹⁾ 대비 59.5%로 연간 목표액에 무난히 도달 할 것으로 판단되나,

- 향후 징수 전망이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로 전년 동기 대비 90%대 까지 회복되어 금년 6월부터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국가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가중, 서민층을 위한 감세 정책의 지속·확대 추진 등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경제 동향 및 징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세원 관리,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대책 수립 등 道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1)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 7,600억원, 7월말 징수실적 : 4,519억원(당초대비 59.5%)

○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600억원을 반영하였고 제1회 추경에 18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914억원을 반영하여 총 1,698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음.

- 이러한 순세계 잉여금과 같은 가용재원은 본예산 위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한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과다 계상하였거나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 추진에 적정한 예산만 계상하고 다른 필요한 사업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인 분권교부세 추가분과 부동산 교부세 163억원이 추가 교부 되었지만 지방교부세 재정 보전분이 702억원이나 감소됨에 따라 총 420억원이 감액됨.

- 이러한 지방교부세 감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층을 위한 감세 정책에 따른 국가 세수 감소 문제로 전국적 현상이며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도록 지속적 건의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타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채 발행은 8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장기저리 정부채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여 지방교부세 감액 및 세입 결손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금년도 지방채 발행은 현 경제위기 상황의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재정 지출 확대 차원에서 정부의 지방채 확대 발행 계획에 의하여 '09년 한시적으로 한도액을 초과 발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승인됨에 따라 발행액이 예년보다 높아짐.
- 하지만, 지방채는 결국 향후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채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발행할 경우 상환이자²⁾ 및 원리금 부담 등으로 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결국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채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운영하는 등 지방채 상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내역

(단위:억원)

구 분	발 행 액 (1회추경포함)	이 자			비 고
		이자총액	정부지원	道 부담	
세입결함보전분	1,200	530	45	485	

나) 세출예산

○ 금번 추경 예산안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차원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경제위기 대응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개청 이후 재정규모가 처음으로 5조원을 넘었음.

○ 조기 추경에 따른 가용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 사업의 증감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지방비 부담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를 조정하였음.

○ 세출예산의 기능별³⁾ 특이사항은

- 환경보호 부문이 1,213억원(기정대비 33.1% 増)이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게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의 국비 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세출예산의 조직별⁴⁾ 특이사항은

- 새경북기획단의 경우 78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정

3) 검토보고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표 참조

4) 검토보고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분류표 참조

예산 대비 6812.4%나 증가한 것으로 투자통상본부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추진하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새경북기획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임.

○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사업⁵⁾과 관련하여

- 2009년도 재정 투·융자심사는 총 47건을 심사했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17건, 조건부 24건, 재검토 1건이 심사되었고 5건은 중앙에 심사를 의뢰해 그 결과 적정 1건, 조건부 2건, 재검토 2건으로 심사되었음.
-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사업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정예산대비 사업비가 30%이상 증감⁶⁾이 있는 경우

-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道 자체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의 사업 가운데

5) 『200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붙임 참고자료<자료1>에 게재함.

6) 『기정예산대비 30%이상 증감 편성 사업 현황』은 붙임 참고자료<자료2>에 게재함.

계획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있는 주요사업은 『도내 금융 소외자 지원』 등 46개 사업이며, 기정예산 3억원 이상의 사업중 30%이상 감액이 있는 주요사업은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세부연구 용역』 등 2개 사업임.

- 이중 지역 전략 산업 진흥 사업(섬유분야) 지원, 제조업 창업 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서는 200% 이상 증액이 있었던 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이 중복되는 사유로 인한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세부연구 용역 사업과 서울지역의 임차시세 부담과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숙소 구입 재원으로 대체코자 한 사유로 인한 공무원 숙소 임차 등에서는 60%이상 감액이 있었음.
- 금번 추경이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세입을 감액 조정하고 지방채를 800억원이나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임을 감안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 도시 보건지소 확충, 낙동강 경관 테마가로 숲 조성 등 전액 감액 시킨 사업⁷⁾과 90%이상 감액하는 사업의 경우 사실상 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7) 『기정예산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 현황』은 붙임 참고자료<자료3>에 게재함.

당초 예산수립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출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 또는 법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는 기정예산액 대비 17.3%나 증액 편성⁸⁾ 되었음.
-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및 타당성 여부와 출연 받은 법인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예산만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지, 관례적으로 매년 점증적 출연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8) 출연금 추경 예산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비 고
출연금(306-01)	50,623	43,161	7,462	17.3%	

◆ 주요 출연금 추경예산 편성 현황 ◆

(단위: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경제교통정책과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530	420	110	26.2	
과학기술과	포항지능로봇연구소건립	800	500	300	60.0	
"	나노기술집적센터건립	1,200	1,000	200	20.0	
미래전략산업과	포항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400	300	100	33.3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지원	474	400	74	18.5	
여성청소년가족과	도청소년수련센터운영지원	1,097	778	319	41.0	
보건정책과	포항의료원기능강화	4,454	3,680	774	21.0	
"	김천의료원기능강화	6,228	3,454	2,774	80.3	
"	안동의료원기능강화	3,996	2,168	1,828	84.3	
인재양성과	경북학숙운영지원	643	490	153	31.2	
환경정책과	재단법인경상북도환경연수원설립	488	0	488	100.0	
해양정책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지원	200	0	200	100.0	
기업노사지원과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	632	490	142	29.0	

○ 신종플루 예방 대책에 대해서

-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면서 국내 감염 환자수가 3,532명('09. 7. 21현재)으로 늘어났으며, 우리 道의 환자 발생 현황은 '09. 7. 8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해 '09. 8. 26일 현재 85명으로 늘어났음.

- 우리 道의 경우 신종플루 대책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부장 행정부지사), 비상기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제 확보, 거점병원(38개소) 및 약국(44개소)도 운영 중에 있음.
- 아울러,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 보건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道民이 원활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교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회계

- 道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총 6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는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5종 특별회계를 계상하였는데 대부분 전입금 또는 잉여금의 세입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 ▣ 200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 ▣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감 편성 사업 현황
- ▣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 현황

< 자료 1 >

◆ 200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

(단위:억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심 의 결 과	비 고
중앙	포항시	소화조효율 개선사업	458	조건부	
중앙	상주시	상주시 자전거나라 조성사업	450	조건부	
중앙	경산시	경산시민종합운동장 건립	998	재검토	
중앙	칠곡군	칠곡종합운동장 건립	349	적정	
중앙	고령군	대가야문화밸리조성사업	917	재검토	
자체	민물고기 연구센터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건립	200	재검토	
자체	종합건설 북부지소	소광도로 정비공사	31	적정	
자체	종합건설 북부지소	물야우회도로개설공사	32	적정	
의뢰	포항시	포항전통문화체험관건립	53	조건부	
의뢰	포항시	포항야구장건립공사	234	조건부	
의뢰	포항시	종합경기장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248	조건부	
의뢰	포항시	죽장면 소규모하수도 설치공사	63	적정	
의뢰	경주시	환경드림파크 조성	110	조건부	
의뢰	김천시	친화경생태공원 조성	100	조건부	
의뢰	김천시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20	조건부	
의뢰	김천시	하수슬러지 재이용 시설설치	109	적정	
의뢰	안동시	노하지구 차집관로 설치공사	85	조건부	
의뢰	안동시	경북유교문화회관 건립	50	조건부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심 의 결 과	비 고
의뢰	안동시	하회별 신긱탈놀이 공연장(전수관)건립	90	조건부	
의뢰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건립	180	조건부	
의뢰	구미시	산동 비재도로 선형개선사업	159	적정	
의뢰	구미시	금오 실내테니스장 신축 및 시설확장공사	77	적정	
의뢰	영주시	영주테마공연장 및 문화원 건립사업	116	적정	
의뢰	영주시	영일교~가흥교차로 도로개설사업	74	적정	
의뢰	영주시	영주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사업	100	조건부	
의뢰	문경시	단산터널 개설공사	290	조건부	
의뢰	문경시	문경소도읍종합육성사업	150	적정	
의뢰	경산시	경산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92	조건부	
의뢰	경산시	진량2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시설	148	적정	
의뢰	경산시	와촌지구하수관거정비	160	적정	
의뢰	군위군	군위소도읍육성사업	70	적정	
의뢰	군위군	군위역사문화재현테마공원조성사업	114	조건부	
의뢰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62	조건부	
의뢰	의성군	왜가리전통생태마을조성	70	조건부	
의뢰	청송군	객주문학관광테마촌조성사업	195	조건부	
의뢰	영양군	청북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96	적정	
의뢰	영양군	목재문화체험장(우드랜드)조성	60	조건부	
의뢰	영양군	일월산권역개발사업	86	적정	
의뢰	영덕군	영덕오션월드공원조성사업	200	조건부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심 의 결 과	비 고
의뢰	영덕군	웰빙황토테마관광마을조성	200	조건부	
의뢰	영덕군	산림경관벨트조성사업	72	조건부	
의뢰	성주군	독산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81	적정	
의뢰	성주군	선남~기산간도로확포장공사	160	조건부	
의뢰	칠곡군	약목준공업지역도시계획도로개설	160	조건부	
의뢰	울진군	울진금강송생태숲조성사업	50	적정	
의뢰	울릉군	독도현지사무실설치	100	적정	
의뢰	울릉군	태하항방파제보강사업	92	조건부	

< 자료 2 >

◆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감 편성 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새경북기획단	3대문화권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세부연구용역	91	300	△209	△69.7	
경제교통정책과	도내금융소외자지원	1,000	0	1,000	100.0	
과학기술과	LED-IT융합산업화지원센터건립	600	300	300	50.0	
"	WRO2009세계로봇올림피아드대회개최	700	300	400	133.3	
미래전략산업과	경북섬유산업특화육성사업	500	300	200	66.7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섬유분야)지원	550	150	400	266.7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건강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사업	820	500	320	64.0	
여성청소년가족과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지원	1,860	1,260	600	47.6	
"	어려운아동중식지원	12,980	8,784	4,196	47.8	
"	도청소년수련센터운영지원	1,097	778	319	41.0	
보건정책과	셋째아이상출산장려금지원	700	500	200	40.0	
자치행정과	공무원대여학자금부담금	1,060	700	360	51.4	
"	지방동시선거관리경비	1,649	0	1,649	100.0	
"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2,844	1,544	1,300	84.2	
인재양성과	경북학숙운영비	643	490	153	31.2	

(단위:백 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인재양성과	저소득층자녀글로벌영어교육지원사업	500	0	500	100.0	
"	유치원공교육강화지원	550	0	550	100.0	
새마을봉사과	저개발국가국제새마을운동보급	650	500	150	30.0	
"	소규모주민편익사업	6,000	3,000	3,000	100.0	
회계계약심사과	공무원숙소임차	100	800	△700	△87.5	
"	구보건환경연구원청사리모델링	650	500	150	30.0	
수질보전과	하수관거정비사업	1,538	930	608	65.4	
친환경농업과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	500	300	200	66.7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591	0	1,591	100.0	
"	과원폐업지원(FTA기금)	1,834	0	1,834	100.0	
식품유통과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물류비)지원	1,800	1,100	700	63.6	
"	학교급식용우수식재료구입비지원	3,074	2,337	737	31.5	
잠사곤충사업장	잠사곤충사업장청사이전	6,200	1,200	5,000	416.7	
투자유치과	외국인투자지역조성토지매입비	2,067	1,000	1,067	103.4	
"	부품소재전용공단부지매입비	2,000	1,000	1,000	100.0	
기업노사지원과	제조업창업기업투자보조금지원	1,650	260	1,390	534.6	
관광개발과	녹색테마관광인프라	500	0	500	100.0	

(단위:백 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문화예술과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700	300	400	33.3	
체육진흥과	제48회도민체전시설개보수	2,000	0	2,000	100.0	
체육진흥과	제49회도민체전시설개보수	500	0	500	100.0	
"	도생활체육협의회사업비지원	946	636	310	48.7	
문화재과	도지정문화재보수	3,500	2,500	1,000	40.0	
도시계획과	일반산업단지공공시설물정비	900	500	400	80.0	
균형개발과	기타회계전출금	514	0	514	100.0	
도로철도과	지역현안도로사업	26,420	20,000	6,420	32.1	
치수방재과	청도천예리잠수교개체	2,000	0	2,000	100.0	
"	치수사업특별회계운용	4,000	3,000	1,000	33.3	
종합건설 사업소	교량보수사업시설비	1,790	1,290	500	38.8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초과근무수당	588	307	281	91.7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전자정부망이용료	739	323	416	128.5	
안동소방서	입암119지역대이전신축	638	0	638	100.0	
구미소방서	고아119지역대이전신축	592	0	592	100.0	
상부소방서	남부119통합지역대이전신축	589	0	589	100.0	

※ 증액사업은 예산액 5억원 이상, 감액사업은 기정액 3억원 이상만 작성함.

< 자료 3 >

◆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의회사무처	영유아보육수당	0	12	△ 12	△ 100.0	
공보관실	도청홍보포럼참석실비보상금	0	14	△ 14	△ 100.0	
〃	청내유선방송선로증설	0	5	△ 5	△ 100.0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참석수당	0	24	△ 24	△ 100.0	
〃	지속가능발전운영위원회참석수당	0	6	△ 6	△ 100.0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관리용역	0	80	△ 80	△ 100.0	
광역협력팀	지역균형발전추진자체평가	0	30	△ 30	△ 100.0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규제개혁촉진자회의수당및여비	0	12	△ 12	△ 100.0	
미래전략산업과	바이오한방ONESTOP서비스시스템구 축	0	50	△ 50	△ 100.0	
정보통신산업과	공모과제사업시스템구축	0	200	△ 200	△ 100.0	
공무원교육과	신규임용자과정위탁교육비	0	56	△ 56	△ 100.0	
감사관실	부패방지신고보상금	0	20	△ 20	△ 100.0	
사회복지과	위기가구응급지원사업	0	200	△ 200	△ 100.0	
여성청소년 가족과	종일돌봄교실운영	0	100	△ 100	△ 100.0	
보건정책과	도시보건지소확충	0	305	△ 305	△ 100.0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인재양성과	고시전산업력요원	0	14	△ 14	△ 100.0	
회계계약심사과	복식부기결산업무보조인부임	0	9	△ 9	△ 100.0	
독도수호대책팀	독도그림엽서제작해외홍보	0	30	△ 30	△ 100.0	
산림녹지과	숲해설가양성위탁교육	0	20	△ 20	△ 100.0	
산림환경연구원	곤충표본장밋전시대	0	10	△ 10	△ 100.0	
산림환경연구원 수목관리소	4륜오토바이	0	4	△ 4	△ 100.0	
산림환경연구원 수목관리소	임도설계심사위원수당	0	5	△ 5	△ 100.0	
농업정책과	귀농인인턴지원	0	198	△ 198	△ 100.0	
식품유통과	경북쌀신유통사업지원	0	59	△ 59	△ 100.0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질병예방등교육참석자급식비	0	2	△ 2	△ 100.0	
〃	축산물검사관련교육참석자급식비	0	1	△ 1	△ 100.0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검사용가검물처리위탁비	0	5	△ 5	△ 100.0	
수산자원개발 연구소	홍보물및안내팜플렛제작	0	10	△ 10	△ 100.0	
농업기술원 총무과	실험연구동화장실보수	0	6	△ 6	△ 100.0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농촌여성지도자전문능력배양교육	0	5	△ 5	△ 100.0	
국제통상과	하남성자매결연행사	0	30	△ 30	△ 100.0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문화예술과	한국문화원연합회도지회사무실임차비	0	100	△ 100	△ 100.0	
문화재과	경북의설화조사기록	0	200	△ 200	△ 100.0	
건축지적과	지리정보포털시스템구축	0	200	△ 200	△ 100.0	
〃	지리정보포털시스템구축감리비	0	11	△ 11	△ 100.0	
낙동강살리기 추진단	낙동강경관테마가로숲조성	0	1,000	△ 1,000	△ 100.0	
〃	낙동강경관생태마을조성	0	350	△ 350	△ 100.0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도로구조물보수사업시설부대비	0	8	△ 8	△ 100.0	
〃	북부권소규모지역현안도로사업시설부대비	0	6	△ 6	△ 100.0	
소방학교	학사관리프로그램개발	0	5	△ 5	△ 100.0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증감조서 : 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조서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계			△1,619,960	
33	도 청 이 전 추 진 단	명품청사및우수공공디자인 해외벤치마킹	△10,000	
113	사 회 복 지 과	포항시충훈탑이전건립지원	△100,000	
117	노 인 복 지 과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기집발간	△5,000	
126	여성청소년가족과	도청소년수련원센터증축	△300,000	
154	자 치 행 정 과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300,000	
160	새 마 을 봉 사 과	자원봉사단체리더워크샵	△30,000	
161	새 마 을 봉 사 과	2009자원봉사한마음대축제	△30,000	
246	친 환 경 농 업 과	농작물연작피해경감자재지원	△300,000	
350	관 광 개 발 과	녹색테마관광인프라	△200,000	
365	문 화 예 술 과	영화드라마촬영지원	△10,000	
443	소 방 본 부	산내전담의용소방대부지매입(경주)	△150,000	
430	소 방 본 부	피복비(본부 소방행정과)	△1,520	
434	소 방 본 부	피복비(본부 방호구조과)	△6,160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436	소 방 본 부	피복비(소방학교)	△2,000	
438	소 방 본 부	피복비(포항북부소방서)	△13,600	
440	소 방 본 부	피복비(포항남부소방서)	△12,320	
443	소 방 본 부	피복비(경주소방서)	△15,040	
445	소 방 본 부	피복비(김천소방서)	△8,640	
448	소 방 본 부	피복비(안동소방서)	△15,360	
450	소 방 본 부	피복비(구미소방서)	△14,160	
452	소 방 본 부	피복비(영주소방서)	△11,680	
454	소 방 본 부	피복비(영천소방서)	△7,760	
457	소 방 본 부	피복비(상주소방서)	△9,600	
459	소 방 본 부	피복비(문경소방서)	△12,480	
461	소 방 본 부	피복비(경산소방서)	△14,240	
463	소 방 본 부	피복비(의성소방서)	△11,360	
467	소 방 본 부	피복비(고령소방서)	△5,920	
473	소 방 본 부	피복비(성주소방서)	△6,080	
476	소 방 본 부	피복비(칠곡소방서)	△8,720	
478	소 방 본 부	피복비(울진소방서)	△8,32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1,122,364	
62	경 제 교 통 정 책 과	공항버스결손지원(경주,구미)	20,000	
94	감 사 관 실	부패방지신고보상금	10,000	
112	사 회 복 지 과	야사종합복지관부설주민복지센터신축	300,000	
113	사 회 복 지 과	김천시충혼탑주변정비사업	100,000	
133	보 건 정 책 과	에이즈예방활동지원	5,000	
134	보 건 정 책 과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홍보및인쇄등	5,294	
134	보 건 정 책 과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기술지원수당등	3,500	
134	보 건 정 책 과	영양플러스사업홍보및책자유인	1,610	
134	보 건 정 책 과	영양플러스사업자문위원회 운영수당등	2,000	
164	회 계 계 약 심 사 과	구보건환경연구원청사리모델링	50,000	
248	식 품 유 통 과	청송사과종합처리장물류비지원	80,000	
352	관광마케팅사업단	경북순환테마열차홍보마케팅등	200,000	부기명조정 포함
363	문 화 예 술 과	전국향토문학낭송대회개최지원	10,000	
430	소 방 본 부	소방장비보강(본부)	319,960	
440	소 방 본 부	청사환경개선공사(포항남부)	15,000	울릉

【부기신설】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280,000	
신설	도 청 이 전 추 진 단	명품청사및우수공공디자인 해외벤치마킹	10,000	민간인 국외여비
신설	균 형 개 발 과	동남권신공항입지관련특집 및광고	40,000	
신설	균 형 개 발 과	동남권신공항관련팜플렛등 홍보물제작	10,000	
신설	축 산 경 영 과	쇠고기이력제터치스크린지원	220,000	

【예비비 증액】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217,596	
	예 산 담 당 관	예비비	217,596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9. 8(화)

2009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경 상 북 도 의 회

2009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합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 경상북도교육감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8.14, 경상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9. 9. 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 9. 4 : 상정·질의, 토론·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이동출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4.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총규모

- 200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에 해당하는 659억5천만원이 증액된 2조7,675억원으로 편성됨.

◆ 예 산 총 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A - B	증감율(%)
세입·세출	2,767,504	2,701,554	65,950	2.4

나.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59억5천만원이 증액된 2조7,675억원으로

○ 이전수입은

- 기정예산 2조5,376억1천만원보다 1,008억원(△4.0%)이 감액된 2조4,368억1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8.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보통교부금 1,485억2천만원은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193억3천만원, 국고보조금 108억4천만원은 증액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전입금은 135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기타 이전수입에서 학교체육관건립 29억4천만원 등 40억
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은

- 총 59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1%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461억
5천만원보다 13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자산임대 및 자산매각대인 자산수입 120억원, 잡수입 12
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차입은

- 총 1,563억3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6%를 차지하며 기정
대비 순증되었음.

○ 기타수입은

- 총 1,149억7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2%를 차지하며 기정
대비 28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장 관 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2,767,504	100.0	2,701,554	100.0	65,950	2.4
이 전 수 입	소 계	2,436,805	88.1	2,537,607	93.9	△100,802	△4.0
	중이 양전 정수 부입	2,194,313	79.3	2,312,672	85.6	△118,359	△5.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7,404	8.6	223,850	8.3	13,554	6.1
	기타이전수입	5,088	0.2	1,086	0.0	4,002	368.5
자 체 수 입	소 계	59,398	2.1	46,146	1.7	13,252	28.7
	교수 - 학습 활동수입	29,425	1.1	29,417	1.1	8	0.0
	행정활동수입	281	0.0	281	0.0	0	0.0
	자산수입	17,912	0.6	5,909	0.2	12,003	203.1
	이자수입	10,109	0.4	10,109	0.4	0	0.0
	잡수입	1,671	0.1	430	0.0	1,241	288.6
차 입	소 계	156,327	5.6	0	-	156,327	-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156,327	5.6	0	-	156,327	-
기 타	소 계	114,974	4.2	117,800	4.4	△2,826	△2.4
	전년도이월금	114,974	4.2	117,800	4.4	△2,826	△2.4

다.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인 659억5천만원이 증액된 2조 7,675억원으로

○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 예산액 2조5,659억 8천만원보다 687억7천만원(2.7%)이 증액된 2조 6,347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5.2%를 차지하며

- 교수-학습활동지원 342억 4천만원
- 교육격차해소 60억 2천만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41억 3천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47억 6천만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86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인적자원운용 90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평생·직업교육비는

기정 예산액 77억2천만원보다 9억8천만원(12.6%)이 증액된 86억9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하며

- 평생교육 9억 7천만원
- 직업교육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교육일반비는

기정 예산액 1,278억6천만원보다 38억원(△3.0%)이 감액된 1,240억7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5%를 차지하며

- 교육행정일반 2억 8천만원
- 기관운영관리 15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예비비및기타 56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 총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2,767,504	100.0	2,701,554	100.0	65,950	2.4
유아및초중등교육	2,634,747	95.2	2,565,975	95.0	68,772	2.7
평 생 · 직 업 교 육	8,690	0.3	7,715	0.3	975	12.6
교 육 일 반	124,067	4.5	127,864	4.7	△3,797	△3.0

◆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2,767,504	100.0	2,701,554	100.0	65,950	2.4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소 계	2,634,747	95.2	2,565,974	95.0	68,772	2.7
	인적자원운용	1,497,146	54.1	1,506,210	55.8	△9,064	△0.6
	교수 - 학 습 활 동 지 원	204,719	7.4	170,476	6.3	34,243	20.1
	교육격차해소	91,910	3.3	85,888	3.2	6,022	7.0
	보 건 / 급 식 / 체 육 활 동	36,872	1.3	32,738	1.2	4,134	12.6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574,645	20.8	569,882	21.1	4,763	0.8
	학 교 교 육 여 개 선 시 설	229,454	8.3	200,781	7.4	28,673	14.3
평생 직업 교육	소 계	8,690	0.3	7,715	0.3	975	12.6
	평 생 교 육	5,129	0.2	4,159	0.2	970	23.3
	직 업 교 육	3,561	0.1	3,556	0.1	5	0.1
교육 일반	소 계	124,067	4.5	127,864	4.7	△3,797	△3.0
	교육 행정 일반	47,005	1.7	46,727	1.7	278	0.6
	기관 운영 관리	43,746	1.6	42,156	1.6	1,590	3.8
	지 방 채 상 환 및 리 스	17,382	0.6	17,382	0.6	0	0.0
	예 비 비 기	15,934	0.6	21,599	0.8	△5,665	△26.2

□ 세출예산의 성질별 규모는

○ 물건비는

- 기정예산보다 24억원(2.5%) 증액된 966억4천만원

○ 이전지출비는

- 기정예산보다 8억7천만원(0.5%) 증액된 1,924억3천만원

○ 자산취득비는

- 기정예산보다 217억2천만원(8.3%) 증액된 2,381억3천만원

○ 전출금은

- 기정예산보다 562억6천만원(6.6%) 증액된 9,147억8천만원

○ 인건비는

- 기정예산보다 96억4천만원($\Delta 0.8\%$)감액된 1조2,497억7천만원

○ 예비비 및 기타는

- 기정예산보다 56억7천만원($\Delta 26.2\%$) 감액된 159억3천만원임

◆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금 액	%	금액	%		
합 계	2,767,504	100.0	2,701,554	100	65,950	2.4
인 건 비	1,249,765	45.2	1,259,402	46.6	△9,637	△0.8
물 건 비	96,641	3.5	94,238	3.5	2,403	2.5
이전지출	192,429	7.0	191,560	7.1	868	0.5
자산취득	283,127	10.2	261,409	9.7	21,718	8.3
상환지출	14,828	0.5	14,828	0.5	0	0.0
전 출 금	914,781	33.1	858,518	31.8	56,263	6.6
예비비및기타	15,933	0.6	21,599	0.8	△5,665	△26.2

□ 세출예산의 기관별 편성내역은

- 교육위원회는 기정예산보다 0.2%증가한 7억4천만원이고
- 본청 예산은 기정예산 2조796억원보다 1.2% 증가한 2조1,053억2천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76.1%를 차지하며
-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예산은 기정예산 142억7천만원보다 7.3%증가한 15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 포항교육청을 비롯한 23개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 6,069억5천만원보다 6.5%증가한 6,461억4천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3.3%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767,504	100.0	2,701,554	100.0	65,950	2.4
교육위원회	742	0	741	0	1	0.2
본 청	2,105,319	76.1	2,079,597	77.0	25,722	1.2
직 속 기 관	15,303	0.6	14,268	0.5	1,035	7.3
지역교육청	646,140	23.3	606,948	22.5	39,192	6.5
포항교육청	97,292	3.5	95,415	3.5	1,877	2.0
경주교육청	51,747	1.9	48,966	1.8	2,780	5.7
김천교육청	36,305	1.3	33,579	1.3	2,726	8.1
안동교육청	37,342	1.3	35,590	1.3	1,752	4.9
구미교육청	73,179	2.6	66,196	2.5	6,983	10.5
영주교육청	29,766	1.1	26,727	1.0	3,039	11.4
영천교육청	26,500	1.0	24,802	0.9	1,697	6.8
상주교육청	29,814	1.1	27,430	1.0	2,384	8.7
문경교육청	22,270	0.8	20,585	0.8	1,685	8.2
경산교육청	63,052	2.3	60,452	2.2	2,600	4.3
군위교육청	11,833	0.4	11,080	0.4	754	6.8
의성교육청	15,518	0.6	15,162	0.6	356	2.3
청송교육청	11,327	0.4	10,701	0.4	626	5.8
영양교육청	8,726	0.3	7,965	0.3	762	9.6
영덕교육청	14,816	0.5	14,560	0.5	257	1.8
청도교육청	12,630	0.5	11,977	0.5	653	5.5
고령교육청	12,695	0.5	11,323	0.4	1,372	12.1
성주교육청	12,263	0.4	11,965	0.4	298	2.5
칠곡교육청	32,321	1.2	30,147	1.1	2,174	7.2
예천교육청	16,131	0.6	13,981	0.5	2,150	15.4
봉화교육청	9,850	0.4	9,577	0.4	273	2.9
울진교육청	15,780	0.6	14,130	0.5	1,650	11.7
울릉교육청	4,982	0.2	4,638	0.2	343	7.4

5. 검토의견

□ 세입부문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659억5천만원이 증액된 2조7,67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이전수입 1,008억원, 전년도 이월금 28억3천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자체수입 132억5천만원, 지방교육채 차입금 1,563억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이 중에서 지방교육채 발행⁹⁾ 1,563억3천만원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교육채 및 이자상환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될 예정임
- 세입 예산 중 기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10억9천만원 대비 40억원(368.5%), 자산수입은 기정예산 59억9천만원 대비 179억1천만원(203.1%)으로 각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 기관, 협회 또는 단체에서 교육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기타이전수입에 대하여는 지원시기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재정지원단체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세수추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9) 고정금리 연 4.12%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

- 그리고 자산수입은 어려운 교육재정의 상황에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바, 당해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하여 203.1% 증가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잡종재산의 매각은 예산편성 전에 재산의 향후 가치에 대한 판단 후 매각이 결정되면 가급적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순세계잉여금은 28억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의 편성이 2008회계년도 결산에 앞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으로 사료됨.

□ 세출부문

○ 예산의 과다 책정과 관련하여

-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68억9천만원(△62.9%),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0억4천만원(△18.3%),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¹⁰⁾운영 11억3천만원(△30.4%)이 각각 감액되었음.
- 이는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재원의 사정이 열악함을 이해하고, 시급한 사업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사업진행에 차질을 겪는 일이

10)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 해외교포 및 외국인 대학생을 농산어촌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영어강사로 채용하는 사업

발생치 않도록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교과교실제추진지원에 대하여

- 교과교실제추진지원사업은 133억원이 계상된 신규사업으로 수준별·맞춤형수업을 실시하며 수업전문성을 향상하고 교과특성 중심의 수업을 통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교과교실제는 A,B,C형¹¹⁾으로 나뉘어 운영되나 교육과정이 다양화됨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문제 및 우열반으로의 변질 등이 우려되고 있는 바,
-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일선학교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

11) 교과교실제 운영내용

유형	운영내용	학교수	평균지원액
A형(선진형)	-선진형 교과교실제 모형적용 -대부분 교과목에 적용	4	교당 15억
B형(과목 중점형) - B-1형 : 수학,과학 - B-2형 : 영어	-해당 모형별 교과교실제 운영 및 수업시간 확대	15	교당 5억
C형(수준별 수업형)	-일부교과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19	교당 3억

실있는 수업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 대하여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기정예산대비 286억7천만원 (14.3%)이 증액된 2,007억8천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의 43.5%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김천고 생활관 리모델링사업비는 금회 1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김천고가 2009년 7월 15일 도내에서 유일하게 자율형 사립학교¹²⁾로 지정되어, 올해 하반기 선발하는 학생모집의 범위가 경상북도내로 확대됨에 따라 기숙학생을 위하여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임.
- 아울러 금오공고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23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오공고는 구미전자공고와 함께 마이스터고¹³⁾로 지정되어 2010년 3월부터 운영됨.
-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운영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12) 자율형사립고등학교 - 기숙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함께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
-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제공

13) 마이스터고등학교 : 중견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

할 것이며,

- 도교육청의 교육지표인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육성’에 걸맞게 운영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학교의 학원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특성화고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들과의 차별이 없도록 원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에 대하여

- 기정예산에서 편성된 후 취소된 사업은 일반교실냉난방시설개선공사 3억2천만원 등 총 33건 15억2천만원으로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나,
- 이는 예산을 사장시키고 필요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는 부적합하므로 모든 교육사업의 계획수립시 면밀하고 신중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 중 취소사업(3천만원 이상) ◆

(단위:백만원)

기관(부서)	사업명	물량	예산액	비고
초등교육과	독도바로알기 행사	사업취소	△55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페스티벌개최	사업취소	△30	
중등교육과	교원국외체험연수	사업취소	△60	
중등교육과	교원단체사무실이전임대보증금	사업취소	△100	
총 무 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사업취소	△57	
학교운영지원과	2009년작은학교가꾸기사업	사업취소	△200	
학교운영지원과	사립학교사무직원과원해소	사업취소	△160	
교육시설과	일반교실냉난방시설개선 (죽변교)	사업취소	△317	

◆ 시설사업 중 취소사업 ◆

(단위:백만원)

기관(부서)	학교명	사업명	물량	예산액	비고
경주교육청	불국사초	담장설치	사업취소	△37	
김천교육청	구성초	통폐합학교지원 (교실바닥개체)	사업취소	△39	
영주교육청	영광여중	보건실보수공사	사업취소	△17	
영주교육청	동산여중	화장실개보수공사	사업취소	△111	
경산교육청	중앙초	조례대설치	사업취소	△37	
의성교육청	의성초	교실바닥개체	사업취소	△103	
예천교육청	감천중	일반교실 냉난방시설개선	사업취소	△59	

○ 학교 보건사업에 대하여

- 금회 추경에 보건과 관련한 사업비는 기정대비 1억2천만원 (1.1%)이 증액된 108억3천만원으로 각종 학교학생들의 위생 관리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나 현재 유행중인 신종플루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 내역이 없음.
- 8월 27일 현재 경북에서는 확진환자 총 88명 중 학생들은 19개교에서 28명(학생)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6개교가 휴교중인 상태이며 이런 추세로 보아 추가 발생이 예상됨.
- 지역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전염병 확산방지 대책마련이 시급을 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 금회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 중에서 금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학습보조 인턴교사사업은 6억5천만원이 계상되어있음.

- 당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공교육 경쟁력제고 및 청년실업해소가 목적이나 당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보기에 4개월의 짧은 기간에 사업을 시행토록 책정한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통하여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조서별첨)

9.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09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조서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계		△1,959,011	
331	중 등 교 육 과	영어체험교실설치(13개교 감)	△780,000	
331	중 등 교 육 과	영어전용교실설치(9개교 감)	△540,000	
667	재 무 관 리 과	포항이동고교장사택임차비	△100,000	
828	중 등 교 육 과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539,011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1,959,011	
	예 비 비		1,959,011	

□ 동 의 안

- 2009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보전을 위한 지방채발행안

2009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9. 8. .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본 계획안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산업구조고도화 및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조성하는 「포항 부품소재전용공단」 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내 327,240㎡(도 지분 40,905㎡)
(국 75%, 도 12.5%, 포항시 12.5%)
- 총 매입비 644억 6천 6백만중 도 지분 금액 80억 5천 8백만원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3. 주요골자

○ 취득재산

- 토 지 : 1건, 327,240㎡ 중 40,905㎡

4. 취득재산의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건 명	면 적	추 정 액	용도 및 필요성
취득	소 계 토 지 건 물	40,905㎡ 40,905㎡	8,058,285 8,058,285	
	포항 부품·소재전용공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327,240㎡ 중 40,905㎡	8,058,285 (지분해당액)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 총액 64,466,280
	이	하	여	백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② 둘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자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 ⑪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지원항목 및 비율)

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자금의 지원항목 및 지원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가가 매입하는 토지의 비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100분의 40, 기타지역의 경우는 100분의 75

2. ~ 7. 《생략》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09년도 수시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상반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327,240m ² 중 40,905m ²	8,058,285 (지분해당액)	1	327,240m ² 중 40,905m ²	8,058,285 (지분해당액)	
	1.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327,240m ² 중 40,905m ²	8,058,285 (지분해당액)	1	327,240m ² 중 40,905m ²	8,058,285 (지분해당액)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이		하			여	백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2009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illegible]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보전을 위한

지 방 채 발 행 안

I. 제출근거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을 보전하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을 제출합니다.

II. 지방채 발행 사유

-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세수부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감액된 재원을 보전하고,
- 추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리금 및 이자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는 전제로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었으므로 2009년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재원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III. 발행안 : 붙임

2009년도 지방채 발행안

I.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보전

II.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항 및 제2항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III. 지방채 발행 계획

- 발행계획 : 156,326,659천원
- 사업명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 차입선 : 금융기관(한국은행)
- 차입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고정금리 4.12%)
- 상환부담 :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차입시기 : 2009년도 하반기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채 발행 승인 총괄 내역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예정액	지방채 발행(융자) 조건			비 고
		기 간	금리 (고정)	상환 부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56,326,659천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4.12%	국고	교육과학기술부 승인(2009.5.28)

□ 기 타 안

- 202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	--

제출 년월일 : 2009. 8. .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주요내용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 기정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8년(1998년)
- 목표연도 : 2020년(변경없음)

○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경산·영천시, 고령·칠곡·청도·성주·군위군), 대구광역시

○ 계획인구 : 373만(경북 113, 대구 260)

○ 내용적범위

- 광역도시권의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계획, 녹지·경관관리
-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변경내용』

-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 단지, 물류단지,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개발제한 구역 해제가능 총량(31.462km²)의 30%인 9.437km² 추가확보물량 반영 등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
 - 추가확보면적 : 경상북도 1.731km²(경산 0.537km², 고령 0.190km², 칠곡 1.004km²), 대구광역시 7.706km²
 - 광역도시계획 수립이후 변화된 도시용지와 도시화예정용지 반영
 -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 조정에 따른 도시화예정용지 반영

3. 추진경위

- '08.09.30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 국무회의 심의·의결
- '08.11.03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지침개정(국토해양부)
- '08.12.29 : 용역 계약 - (재)대구경북연구원(계약금744만원)
 - ※ 『대구권 광역도시계획변경』은 대구광역시와 공동수립
- '09. 2. ~ 5. : 시군별 개발수요 검토 및 추가해제요구물량 산정
 - 경산시 : 0.537km², 고령군 : 0.190km², 칠곡군 : 1.004km²
- '09. 7.09 ~ 7.23 : 광역도시계획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3차)
 - ※ 자문결과 기존 해제총량의 30%인 9.437km²(경북 1.731, 대구 7.706)를 추가 해제가능물량으로 결정

4.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절차이행 : '09. 7. 23.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09. 8. 31. : 대구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주민공청회 개최
- '09. 9.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국토해양부 승인 신청
- '09. 10. :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9. 11. :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변경) 결정 고시

□□ 도의회 의견제시

첫째, 추가해제가능 면적범위의 확대 의견

- 37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가격과 개발행위 제한 등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 금번 해제가능물량 추가확보면적은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능충량인 31.462km²의 30%인 9.437km²이나 전체 개발제한구역 517.758km²에 비하면 1.8%에 불과하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 확대 필요함.

⇒ 이에, 추가해제 가능물량 범위를 현행 10~30%에서 80 ~100%로 확대해 줄 것.

둘째,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확대 의견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고 계속 존치되는 지역은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주환경 속에서 주민생활이 매우 불편한 것이 현실임.

⇒ 이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가능 대상시설물의 확대 등 건축규제를 지금보다 대폭 완화 적용이 필요하며, 현재 추진중인 진입로, 농업용 용·배수로, 소하천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소득증대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또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세제의 감면 등 직·간접적 보상대책을 강구해 줄 것.

셋째, 중복규제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의견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상수원보호구역,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지역이 많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중복규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해 개발규제가 가능하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를 요구함.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33회 임시회, 제234회 정례회)

2009. 9 인쇄 / 2009. 9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45

FAX : 602-5140

<비매품>